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 1248호

2015년 7월 24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고 제2015- 1141호	도시계획시설 【도로:소래셋길소2-14호선】 사업공사 완료 공고	3
○ 공고 제2015- 1142호	도시계획시설 【도로:도림1지구소3-12호선】 사업공사 완료 공고	4
○ 공고 제2015- 1147호	도로지정공고	5
○ 공고 제2015- 116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
○ 공고 제2015- 1171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고잔동 소2-2호선 외 5개노선) 결정(변경) 열람공고	17
○ 공고 제2015- 1172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 지구 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공고열람	19
○ 공고 제2015- 1173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소3-7호선) 결정 열람공고	21
○ 공고 제2015- 1175호	도로지정공고	22
○ 공고 제2015- 1178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 연락골지구 소3-2호선】 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	23
○ 공고 제2015- 118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7
○ 공고 제2015- 118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0
○ 공고 제2015- 118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56
○ 공고 제2015- 118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4
○ 공고 제2015- 118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82
○ 공고 제2015- 118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94
○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15- 44호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104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홍보미디어실



제 1248호

2015년 7월 24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고 시

- 고시 제2015- 97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서창 제7주차장] 사업 105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 고시 제2015- 98호 도로명주소 고시 107
- 고시 제2015- 99호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 109
가경정예산 고시
- 고시 제2015- 100호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고시 116
- 고시 제2015- 101호 통·반 구역 조정 결정고시 120

회 람								
--------	--	--	--	--	--	--	--	--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5-1141호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래샛길 소2-14호선)사업 공사완료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고시 제2014-39호(2014. 4.25.)호로 실시계획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도로 : 소래샛길 소2-12호선】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 7. 17.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820번길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2-14호선)
 - 명 칭 : 소래샛길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 소로2-14호선 B=8.0~10.0m, L=583.0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남동구청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1008)
5. 공사완료일 : 2015. 7. 17.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5-1142호

도시계획시설(도로 : 도림1지구 소3-12호선)사업 공사완료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고시 제2013-130호(2013.12.20.)호로 실시계획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도로 : 도림1지구 소3-12호선】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 7. 17.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204-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도림1지구 소3-12호선)
 - 명 칭 : 도림1지구 소3-12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 소로3-12호선 B=6.0m, L=217.9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남동구청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1008)
5. 공사완료일 : 2015. 7. 17.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5-1147호

도 로 지 정 공 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의 위치를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5. 7. 20.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제 목 : 도로지정 공고
2. 지정근거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3. 공고기간 : 2015. 7. 20. ~ 2015. 8. 21.
4. 공고 내용

도로위치	지적 면적 (㎡)	도로 너비 (m)	도로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동의
				성 명	
운연동 458-11번지	1,379	4	5	임 * *	본인 동의

5. 공고방법 :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판
6. 관계도서 : 남동구청 도시관리과 비치(열람가능)
7. 기타사항 :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 남동구청 도시관리과(032-453-29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5-116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2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불일치한 사항을 개정하여 상위법령과의 통일성을 기하고, 주민참여감독제 대상공사에 대해 상한금액을 폐지하여 주민참여감독제를 확대운영 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위원회 자문 기능 삭제(안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및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10조제2항)
 - 주민참여감독제 대상공사의 상한금액 폐지(안 제12조제1항)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8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재무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265, FAX 453-226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개정조례(안) : 별첨

인천광역시 남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5년 7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불일치한 사항을 개정하여 상위법령과의 통일성을 기하고, 주민참여감독제 대상공사에 대해 상한금액을 폐지하여 주민참여감독제를 확대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원회 자문 기능 삭제(안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및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10조제2항)
- 주민참여감독제 대상공사의 상한금액 폐지(안 제12조제1항)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회무”를 “사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잔여기간”을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 제10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 가.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 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제1항 중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를 “사항의 심의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사 또는 자문대상”을 “심의를 함에 있어”로, “심의 또는 자문”을 “심의”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심의 또는 자문을”을 “심의를”로, “심의 또는 자문”을 “심의”로 한다.

제7조 중 “심의 또는 자문을”을 각각 “심의를”로,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심의요청서”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심의요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심의회의”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당해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그 심의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심의 또는 자문한”을 “심의”로 한다.

제9조 중 “심의 또는 자문을”을 “심의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상 1억원 이하”를 “이상”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 -----사무----- ----- ----- -----.
② 위원 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 ----- -----. -----남은기간----- --.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가.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영 제108조에서 정한 심의대상 이외의 사업에 대한 입찰참가자	

현행	개정안
<u>격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u> <u>2. 기타 구청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u>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u>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u>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생략) ③ 위원장은 <u>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사 또는 자문대상</u>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u>심의 또는 자문</u>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u>심의 또는 자문을</u>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u>심의 또는 자문</u>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제7조(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u>심의 또는 자문</u>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u>심의 또는 자문요청</u>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 ----- -----<u>사항의 심의가</u>----- ----- -----. ② (현행과 같음) ③ -----<u>심의</u>를 함에 있어 ----- ----- 심의 ----- -----. 제6조(소위원회) ① ----- -----<u>심의</u>를 ----- ----- ----- <u>심의</u>----- -----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7조(심의요청 등) ----- -----<u>심의</u>를----- -----<u>심의요청서</u>-----

현행	개정안
<u>선</u>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u>심의 또는 자문을</u>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u>심의 또는 자문요청서</u>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u>심의 또는 자문회의</u>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u>당해 심의 또는 자문기간</u>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u>심의 또는 자문한</u> 결과를 구청장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u>심의 또는 자문을</u>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 해당분야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	----- ---<u>심의를</u>----- ---.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 -----<u>심의요청서</u>----- -----. ② ----- -----<u>심의회의</u>-----. -----<u>그 심의기간</u>-----. ③ ----- <u>심의</u>-----. 제9조(의견청취 등) ----- ----- <u>심의를</u>----- ----- ----- ----- -----

현행	개정안
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 -----.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u>당해</u>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 ----- ----- <u>해당</u>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u>기타</u>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u>그 밖에</u> ----- -----
제12조(주민참여감독자위촉·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등) ①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u>이상 1억원 이하</u> 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하며, 다만, 긴급을 요하는 재난관련 사업 등 그에 준하는 복구	제12조(주민참여감독자위촉·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등) ① ----- ----- <u>이상</u> ----- ----- -----

현행	개정안
및 개·보수 사업은 예외로 할 수 있다. 1. ~ 9. (생략) ② ~ ④ (생략) 제13조(주민참여 감독자의 임무) ①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u>당해</u> 공사와 관련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구에 전달 2. ~ 4. (생략) ②·③ (생략)	----- --. 1. ~ 9.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주민참여 감독자의 임무) ① ----- -----. 1. <u>해당</u> ----- ----- 2.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약칭: 지방계약법)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32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3.8.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3.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계약사무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그 심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제1항제3호의 경우 그 심의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 결과를 입찰 및 계약체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과징금 부과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③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5-1171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고잔동 소2-2호선 외 5개노선) 결정(변경) 열람 · 공고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고잔동 소2-2호선 외 5개노선)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453-295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며,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 · 공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5. 7. 24.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결 정 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7	10	국지 도로	1,440	소1-5 (고잔177-1)	대3-21 (고잔289-5)	일반 도로	인고 제1588호 (1989.11.13)	
변경	소로	1	7	10	국지 도로	1,440	소1-5 (고잔177-4)	대3-75 (고잔761-2)	일반 도로		
기정	소로	1	10	10	국지 도로	1,180	대3-21 (고잔530-3)	소1-8 (고잔390-2)	일반 도로	인고 제1588호 (1989.11.13)	
변경	소로	1	10	10	국지 도로	1,180	대3-75 (고잔763-2)	소1-7 (고잔390-18)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2	8	국지 도로	1,170	고잔동154	중2-108 (고잔489-4)	일반 도로	인고 제1588호 (1989.11.13)	
변경	소로	2	2	8	국지 도로	1,170	고잔동155-29	중2-108 (고잔457-10)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5	8	국지 도로	536	소1-5 (고잔215)	소1-7 (고잔409-8)	일반 도로	인고 제1588호 (1989.11.13)	
변경	소로	2	5	8	국지 도로	536	소1-5 (고잔215)	소1-7 (고잔409-8)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6	8	국지 도로	305	소1-5 (고잔304)	중2-108 (고잔305-1)	일반 도로	인고 제1588호 (1989.11.13)	
변경	소로	2	6	8	국지 도로	305	소1-5 (고잔304-1)	중2-108 (고잔361-3)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7	8	국지 도로	320	소1-5 (고잔532-1)	중2-108 (고잔470-2)	일반 도로	인고 제1588호 (1989.11.13)	
변경	중로	2	7	8	국지 도로	320	소1-5 (고잔532-3)	중2-108 (고잔470-6)	일반 도로		

나. 도로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 로 1 - 7	소 로 1 - 7	• 접속 가각부 변경 - 연장 : 1,440m - 폭원 : 10m	고잔동 365-1번지 일원(소2-2호선) 도로 개설공사 사업계획 반영에 따른 접속 가각부 변경으로 인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을 변경함.
소 로 1 - 10	소 로 1 - 10	• 접속 가각부 변경 - 연장 : 1,180m - 폭원 : 10m	고잔동 365-1번지 일원(소2-2호선) 도로 개설공사 사업계획 반영에 따른 접속 가각부 변경으로 인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을 변경함.
소 로 2 - 2	소 로 2 - 2	• 선형변경 - 연장 : 1,170m - 폭원 : 8m	현황도로를 도시관리계획시설 규모로 개설(확장)에 따라 노선일 부구간 선형변경으로 인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을 변경함.
소 로 2 - 5	소 로 2 - 5	• 접속 가각부 변경 - 연장 : 536m - 폭원 : 8m	고잔동 365-1번지 일원(소2-2호선) 도로 개설공사 사업계획 반영에 따른 접속 가각부 변경으로 인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을 변경함.
소 로 2 - 6	소 로 2 - 6	• 접속 가각부 변경 - 연장 : 305m - 폭원 : 8m	고잔동 365-1번지 일원(소2-2호선) 도로 개설공사 사업계획 반영에 따른 접속 가각부 변경으로 인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을 변경함.
소 로 2 - 7	소 로 2 - 7	• 접속 가각부 변경 - 연장 : 320m - 폭원 : 8m	고잔동 365-1번지 일원(소2-2호선) 도로 개설공사 사업계획 반영에 따른 접속 가각부 변경으로 인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을 변경함.

2.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방법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453-2952)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 2015- 1172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공고 · 열람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453-2954), 건설과(☎453-272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며,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 · 공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5년 7월 24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주요내용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 없음
 나.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없음
 다.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없음
 라.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 변경 있음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5	6	국지	110	중1-10 장수동 397-4	장수동 400-2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수현
변경	소로	3	5	6	국지	165.7 (110)	중1-10 장수동 397-4	장수동 406-1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도로연장 지구내 110m 지구외 55.7m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소로3-5호선	소로3-5호선	- 도시계획선 연장 변경 - 연장 : 당초(110m) 변경(165.7m) 증(55.7m)	도로의 연계 및 적절한 도로개설을 위한 노선 연장	

마.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 : 변경 없음

2.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나. 의견제출 :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453-2954), 건설과(☎453-2725)

4. 관계도서 : 도시관리계획 조서 및 도면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서 참조)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5 - 1173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소3-7호선)

결정 열람 · 공고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소3-7호선)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453-295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며,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 · 공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5. 7. 24.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도로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결 정 초 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3	7	6	국지 도로	543	논현동 491-5	소로 3-1 (도림동)	일반 도로		

나. 도로결정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신설	-	소 로 3 - 7	• 위치:도림동 산75번지 일원 - 연장 : 543m - 폭원 : 6m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인 도림2지구로 진입하는 기존 관습상 도로인 수골로의 폭원을 확장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2.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방법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453-2952)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5-1175호

도 로 지 정 공 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의 위치를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5. 7. 23.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제 목 : 도로지정 공고
2. 지정근거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3. 공고기간 : 2015. 7. 23. ~ 2015. 8. 24.
4. 공고 내용

도로위치	지적 면적 (㎡)	도로 너비 (m)	도로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동의
				성 명	
도림동 500번지	3,326	4	14	배 * *	본인 동의

5. 공고방법 :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판
6. 관계도서 : 남동구청 도시관리과 비치(열람가능)
7. 기타사항 :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 남동구청 도시관리과(032-453-29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5-1178호

도시계획시설[도로 : 연락골지구 소로3-2호선] 사업 실시계획(변경) 열람 ·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고시 제2014-93호(2014. 7. 11.)로 실시계획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 : 연락골지구 소로3-2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을 작성 후 열람·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453-2954), 건설과(☎453-2725)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이며,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공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5. 7. 24.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4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연락골지구 소로3-2호선]
 - 명 칭 : 연락골지구 소로3-2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 소로3-2호선 B=6.0m, L=214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남동구청장(건설과)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1008)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
 - 준공예정일 : 2015.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지장물의 추가에 따른 소유권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의 명세(변경있음) : 「붙임」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 용지 조서(변경없음)

당초 번호	구분	일련 번호	지번	지목	지적 (m2)	편입 면적 (m2)	소유자		관계인		권리관계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변경없음	1	42-3	대	69	69	최*석	연락골로 **				
2	변경없음	2	43-19	대	18	18	한*희	동구송현동23-31 누리아파트***호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중구통일로120 (동암지점)	근저당권	
3	변경없음	3	495-24	천	7	7	건설부					
4	변경없음	4	495-30	천	5	5	건설부					
5	변경없음	5	43-13	대	1	1	이*주	운연동***				
6	변경없음	6	43-14	대	1	1	배*옥	운연동***	남동단위 농협	인천시남구간석동47-4	근저당권	
7	변경없음	7	43-15	대	1	1	배*옥	운연동***	남동단위 농협	인천시남구간석동47-4	근저당권	
8	변경없음	8	43-16	대	10	10	배*옥	운연동***	남동단위 농협	인천시남구간석동47-4	근저당권	
19	변경없음	19	43-17	대	23	23	장*자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943-1 경남아너스빌****				
10	변경없음	10	43-18	대	120	120	최*호	운연동 ***	남동농업 협동조합	만수동1014-1	근저당권	
11	변경없음	11	495-23	천	12	12	건설부					
12	변경없음	12	495-29	천	260	260	건설부					
13	변경없음	13	44-2	임	70	70	정*순	서울 용산구 청파동 2가 ****				
14	변경없음	14	495-28	천	9	9	건설부					
15	변경없음	15	46-7	도	14	14	김*환	운연동 **	남동농업 협동조합	만수동1014-1	근저당권	
16	변경없음	16	46-6	대	13	13	김*환	운연동 **	남동농업 협동조합	만수동1014-1	근저당권	
17	변경없음	17	496-10	구	3	3	농림부					
18	변경없음	18	496-8	구	34	34	농림부					
29	변경없음	29	46-3	도	5	5	배*식	운연동 **				
20	변경없음	20	497-4	도	241	241	건설부					
21	변경없음	21	49-16	도	136	136	배*영	운연동 **				
22	변경없음	22	39-18	대	1	1	배*쇠	운연동 ***	한국가스 공사	경기도성남시분당구 정자동215	지상권	
23	변경없음	23	40-26	대	39	39	이*규	운연동 ***	육*호	양천구 신월동 331-51 제일빌라 *층***호	근저당권	
24	변경없음	24	41-2	대	85	85	이*규	운연동 ***	대성신용 협동조합	동구만석동72-11	근저당권	
25	변경없음	25	40-25	대	18	18	최*조	운연동 ***				
26	변경없음	26	40-24	도	7	7	최*조	운연동 ***				
27	변경없음	27	47-4	전	9	9	정*순	서울 용산구 청파동 2가 ****	한국가스 공사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 28-1	지상권	
28	변경없음	28	47-5	전	7	7	정*순	서울 용산구 청파동 2가 ****	한국가스 공사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 28-1	지상권	
29	변경없음	29	48-1	대	37	37	인천광역시					
30	변경없음	30	48-2	도	6	6	배*영	인천 남동구 연락골로 ** (운연동)				
31	변경없음	31	산60-13	임	43	43	건설부					
32	변경없음	32	495-26	천	1	1	건설부					
33	변경없음	33	495-27	천	34	34	건설부					
	변경없음		계		1,339	1,339						
	변경없음		계		1,339	1,339						

☐ 지장물 조서(변경있음, **정정**)

구분	번 호		건 물 소 재 지		물건의 용도	건 물 구 조	단위	총수량	편입수량	잔여수량	소유자			비고
			동 명	지 번							주소	연락처	성 명	
당초	1	①	남동구 운연동	42-2	담 장	적벽돌	m	27.0	14.0	13.0	연락골로 **		최*석	
		②	남동구 운연동		문 주	적벽돌	㎡	3.3	3.3	-				
		③	남동구 운연동		관상수	사철나무	주	3	3	-				
		소계			담 장	적벽돌	m	27.0	14.0	13.0				
					문 주	적벽돌	㎡	3.3	3.3	-				
					관상수	사철나무	주	3	3	-				
변경	1	①	남동구 운연동	42-3	담 장	적벽돌	m	27.0	19.0	8.0	연락골로 **		최*석	
		②	남동구 운연동		대 문	적벽돌 문주2 철재	식	1.0	1.0	-				
		③	남동구 운연동		수 목	사철나무	주	3	3	-				
			남동구 운연동		수 목	감나무	주	1.0	1.0					
			남동구 운연동		수 목	기타	주	5.0	5.0					
			남동구 운연동		바 닥	콘크리트	식	1.0	1.0					
		소계			담 장	적벽돌	m	27.0	19.0	8.0				
					대 문	적벽돌 문주2 철재	식	1.0	1.0	-				
					수 목	사철나무 등	주	9.0	9.0	-				
					바 닥	콘크리트	식	1.0	1.0					
		변경 없음	2	①	남동구 운연동	40-26	정 화 조	콘크리트조	식	1				
소계				정 화 조	콘크리트조	식	1	1	-					
변경 없음	3	①	남동구 운연동	43-13	문 주	적벽돌	㎡	0.3	0.3	-	운연동 ***		이*주	
		②	남동구 운연동		담 장	적벽돌	m	4.0	0.9	3.1				
		소계			문 주	벽돌	㎡	0.3	0.3	-				
					담 장	블록	m	4.0	0.9	3.1				
당초	4	①	남동구 운연동	41-2	컨테이너	3.0×6.0	㎡	18.0	9.6	8.4	운연동 ***		이*규	
		②	남동구 운연동		창 고	함석, 조립식	㎡	9.0	9.0	-				
		소계			컨테이너	3.0×6.0	㎡	18.0	9.6	8.4				
					창 고	함석, 조립식	m	9.0	9.0	-				
변경	4	①	남동구 운연동	41-2	컨테이너	3.0×6.0	식	1.0	1.0	-	운연동 ***		이*규	
		②	남동구 운연동		창 고	조립식판넬	㎡	9.0	9.0	-				
		소계			컨테이너	3.0×6.0	식	1.0	1.0	-				
					창 고	조립식판넬	㎡	9.0	9.0	-				
당초	5	①	남동구 운연동	40-22	창 고	함석, 조립식	㎡	34.4	4.8	29.6	운연동40-4		최*조	
		②	남동구 운연동		담 장	블록	m	13.4	13.4	-				
		③	남동구 운연동		아궁이	벽돌조	㎡	2.6	1.1	1.5				
		소계			창 고	함석, 조립식	㎡	34.4	4.8	29.6				
					담 장	블록	m	13.4	13.4	-				
					아궁이	벽돌조	㎡	2.6	1.1	1.5				
변경	5	①	남동구 운연동	40-25	창 고	함석, 조립식	㎡	34.4	4.8	29.6	운연동 ***		최*조	
		②	남동구 운연동		담 장	블록	m	13.4	13.4	-				
		③	남동구 운연동		아궁이	벽돌조	식	1.0	1.0	-				
			바 닥		콘크리트	식	1.0	1.0						
		소계			창 고	함석, 조립식	㎡	34.4	4.8	29.6				
					담 장	블록	m	13.4	13.4	-				
					아궁이	벽돌조	식	1.0	1.0	-				
					바 닥	콘크리트	식	1.0	1.0					
변경 없음	6	①	남동구 운연동	43-18	창 고	기와	㎡	57.6	55.0	2.6	운연동 ***		최*호	
		②	남동구 운연동		수도시설	블록조	㎡	1.3	1.3	-				
		③	남동구 운연동		창 고	스레트	㎡	9.9	4.4	5.5				

		④	남동구 운연동	소계	창 고	스레트	㎡	21.0	15.1	5.9					
		⑤	남동구 운연동		비닐하우스	비닐, 철파이프	㎡	8.8	8.8	-					
		창 고	기와,스레트		㎡	88.5	74.5	14.0							
		수도시설	블록조		㎡	1.3	1.3	-							
		비닐하우스	비닐, 철파이프		㎡	8.8	8.8	-							
당초	7	①	남동구 운연동	44-2	유실수	호두나무	주	1.0	1.0	-	서울용산구 청파동 2가 ***-*		정*순		
		②	남동구 운연동		수도시설	블럭조	㎡	0.9	0.9	-					
		유실수	호두나무		주	1.0	1.0	-							
		수도시설	블럭조		㎡	0.9	0.9	-							
변경	7	①	남동구 운연동	44-2	유실수	호두나무	주	2.0	2.0	-	서울용산구 청파동 2가 ***-*		정*순		
		소계	유실수		호두나무	주	2.0	2.0	-						
당초		①	남동구 운연동	44-2	수도시설	블럭조	㎡	0.9	0.9		서울용산구 청파동 2가 ***-*		정*순		
		소계	수도시설		블럭조	㎡	0.9	0.9							
변경		①	남동구 운연동	44-2	수도시설(양수기)	블럭조	식	1.0	1.0		인천 남동구 연락골로 **-*		김*환		
		소계	수도시설(양수기)		블럭조	식	1.0	1.0							
당초	8	①	남동구 운연동	47-5	웬스	철재(H=2.0m)	m	63.0	32.0	31.0	서울용산구 청파동 2가 ***-*		정*순		
		②	남동구 운연동		유실수	자두나무	주	3	3	-					
		③	남동구 운연동		유실수	배나무	주	2	2	-					
		소계	웬스		철재(H=2.0m)	m	63.0	32.0	31.0						
		유실수	나무		주	5	5	-							
변경	8	①	남동구 운연동	47-5	웬스	철재(H=2.0m)	m	63.0	44.0	19.0	서울용산구 청파동 2가 ***-*		정*순		
		②	남동구 운연동		수 목	복숭아나무	주	1.0	1.0	-					
		③	남동구 운연동		수 목	살구나무	주	1.0	1.0	-					
					수 목	자두나무	주	4.0	4.0	-					
					수 목	감나무	주	1.0	1.0	-					
					수 목	마로니에나무	주	4.0	1.0	-					
		소계	웬스		철재(H=2.0m)	m	63.0	44.0	19.0						
		수 목	복숭아나무 등		주	11.0	11.0	-							
변경 없음	9	①	남동구 운연동	46-3	담장	블록	m	15.4	5.5	9.9	남동구연락골로 **(운연동)		배*식		
		소계	담장		블록	m	15.4	5.5	9.9						
	기타	①	남동구 운연동		채신주		주	4	4	-					
		②	남동구 운연동		전력주		주	3	3	-					
		③	남동구 운연동		채신맨홀		ea	1	1	-					
	합 계					담장	적벽돌, 블록	m	59.8	33.8	26.0				
						대문	적벽돌 문주2 철재	식	1.0	1.0	-				
						문주	적벽돌,벽돌	㎡	0.3	0.3	-				
						정화조	콘크리트조	식	1.0	1.0	-				
						컨테이너	3.0×6.0	식	1.0	1.0	1.0				
						창고	함석,조립식, 기와,스레트	㎡	131.9	88.3	43.6				
						아궁이	벽돌조	식	1.0	1.0	-				
						수도시설	블록조	㎡	1.3	1.3	-				
						수도시설(양수기)	블록조	식	1.0	1.0	-				
						비닐하우스	비닐, 철파이프	㎡	8.8	8.8	-				
						유실수	나무	주	2	2	-				
						수목	나무	주	20.0	20.0	-				
						웬스	철재(H=2.0m)	m	63.0	44.0	19.0				
						채신주		주	4	4	-				
						전력주		주	3	3	-				
						채신맨홀		ea	1	1	-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5-118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 7. 23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개정이유

-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2015.7.1.시행)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제명과 내용을 전부 개정하여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추진과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 변경(안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인천광역시 남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조례의 목적, 기본이념, 용어의 정의, 구민의 권리와 의무, 구청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부터 제6조)
-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예산·정책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부터 제8조)
-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및 결산서 작성, 성차별의 금지, 양성평등 주간행사 등 양성평등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9조부터 제22조)
- 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회의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23조부터 제33조)
- 양성평등기금의 설치·용도·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34조부터 제41조)

3. 입법예고기간 : 2015. 7. 23 ~ 8. 12 (20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8. 12(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가정복지과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가정복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453-5861, FAX : 453-5869)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5.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별첨

인천광역시 남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5년 7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2015.7.1.시행)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제명과 내용을 전부 개정하여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추진과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 변경(안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인천광역시 남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조례의 목적, 기본이념, 용어의 정의, 구민의 권리와 의무, 구청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부터 제6조)
-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예산·정책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부터 제8조)
-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및 결산서 작성, 성차별의 금지, 양성평등 주간행사 등 양성평등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9조부터 제22조)
- 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회의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23조부터 제33조)
- 양성평등기금의 설치·용도·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34조부터 제41조)

☐ 본 문 : “별 첨”☐ 참고자료

- 양성평등기본법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의 해소를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양성평등 관련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사회 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등에 관한 법령을 말한다.
3.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구민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관련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구청장의 양성평등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제7조(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자원 및 운용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 시책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예산·정책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편성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시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별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는 등 양성평등이 증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장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제9조(성별영향분석평가) ① 구청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조례·규칙과 성평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성인지 예산 등) 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라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적극적 조치) 구청장은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구청장은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공직 참여) 구청장은 소속 직원의 채용·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4조(경제활동 참여) ① 구청장은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 등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이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모·부성의 권리보장) 구청장은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일·가정 양립지원) 구청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 교육, 유아교육, 방과 후 아동 돌봄,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 서비스 확충,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운영의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성차별의 금지) ① 구청장은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구청장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矯正)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복지증진) ① 구청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양성평등주간 행사) 구청장은 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그 행사를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유공자 및 유공단체 등에 대한 격려
3.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4. 그 밖에 양성평등 촉진 등에 대한 구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21조(유공자 표창)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등에 이바지한 개인, 단체 및 기관,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22조(여성 친화적 도시 공간 및 시설 조성) ① 구청장은 도시기반시설·공공 시설·새로운 택지단지 조성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양성 평등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할 경우 여성의 안전과 편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여성 친화적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 인프라
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3.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

제4장 양성평등위원회

제23조(설치) 구청장은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자문하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심의 조정,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여성단체 등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 및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1.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지원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3.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 운용의 적정 여부 및 성과분석
5. 그 밖에 기금 운용과 양성평등 정책에 관련된 사항

③ 위원회는 구청장에게 양성평등 정책을 위한 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양성평등, 여성가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3. 양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 종사자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여성단체 대표

제26조(임기)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4. 위원이 심의 및 자문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5.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양성평등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양성평등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관계기관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양성평등기금

제34조(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3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3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2. 여성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폭력예방 및 여성권익 증진사업
4. 그 밖에 여성인권 보호 및 복지증진 등 구청장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여유 자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 14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 제36조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운용수익금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제3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9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양성평등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양성평등업무 담당

② 기금관리 공무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0조(준용)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제12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5-118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기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7월 24 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개정이유

- 상위법령과의 규정내용을 일치시켜 납세자의 불편 부담을 완화시키고, 현행 법령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 하여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현행 법령에 맞게 용어 정비 (안 제2조, 제9조, 제10조, 제17조, 제25조)
 - 일반우편, 공탁영수증, 교부금전, 등록확인증 등
- 기한연장 신청기한 연장 : 기한만료일 → 기한만료 3일전 (안 제8조)
- 미납구세에 대한 열람신청자 범위 임차인으로 한정 (안 제14조)
- 징수유예 취소시 일시에 징수하는 방법을 상위법령에 맞게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정비 (안 제23조)
- 지방세 납부기한 연기시 담보제공 예외사유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규정된 납세자의 사업이 위기에 처한 경우를 포함하여 납세자의 금전부담 완화 (안 제24조)
- 체납처분 중지시 공고기간 연장 : 10일 → 1개월(안 제39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을 반영하여 제4장 보칙(지방세심의위원회 삭제)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세무1과(전화 : 032-453-2360 FAX : 032-453-23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5년 8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상위법령과의 규정내용을 일치시켜 납세자의 불편 부담을 완화시키고, 현행 법령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 하여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현행 법령에 맞게 용어 정비 (안 제2조, 제9조, 제10조, 제17조, 제25조)
- 일반우편, 공탁영수증, 교부금전, 등록확인증 등
- 기한연장 신청기한 연장 : 기한만료일 → 기한만료 3일전 (안 제8조)
- 미납구세에 대한 열람신청자 범위 임차인으로 한정 (안 제14조)
- 징수유예 취소시 일시에 징수하는 방법을 상위법령에 맞게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정비 (안 제23조)
- 지방세 납부기한 연기사 담보제공 예외사유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규정된 납세자의 사업이 위기에 처한 경우를 포함하여 납세자의 금전부담 완화 (안 제24조)
- 체납처분 중지시 공고기간 연장 : 10일 → 1개월(안 제39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을 반영하여 제4장 보칙(지방세심의위원회 삭제)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지방세기본법」 제30조, 제64조 제72조 제,84조~제85조, 제87조, 제98조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5조, 제8조
- 「국세징수법」 제85조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하는 때에는 기한이 만료되기 전”을 “할 때에는 기한 만료일 3일전”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구청장은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자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제2항 중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보통우편 송달부)”를 “(일반우편 송달부)”로 하고, 제10조 전단 중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임차인이”를 “법 제64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새로이”를 “새로”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배분금전의 예탁 등)”을 “(교부금전의 예탁 등)”으로 하고, 제17조제1항 중 “배분”을 “교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예탁한 때”를 “예탁한 경우”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충당하는 때”를 “충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23조 전단 중 “징수하여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제24조제1호 중 “법 제80조제1항제1호”를 “영 제8조의제2항”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공탁수령증”을 “공탁영수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등록필증서”를 “등록확인증”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토지·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및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을 필한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확인증

제25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29조제4항 본문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39조제3항 중 “10일간”을 “1개월간”으로 한다.

제4장(제47조부터 제51조까지)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우편"이란 「우편법」에 따른 <u>보통우편</u> 및 등기우편(배달증명우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 <u>일반우편</u> ----- -----.
제8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납세자가 법 제26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u>하는 때에는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u>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8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 ----- <u>할 때</u> 에 <u>는 기한 만료일 3일전</u> ----- ----- ----- <u>. 다만 구청장은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자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생략)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구세종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은 <u>보통우편</u>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9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일</u> <u>반우편</u> -----.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u>보통우편</u> 송달부) 법 제30조	제10조(<u>일반우편</u> 송달부) -----

제6항에 따라 통상우편으로 송달하였을 경우에 비치하여야 하는 보통우편 송달부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발송우체국의 우편물접수인을 날인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 고지서 송달 등) ① (생략)
② 공유물건으로서 지분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구세에 대하여는 그 지분별로 납부해야 할 구세를 각자의 명의로 된 고지서에 공유물건 납세의무자 명단을 첨부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제14조(미납구세 등의 열람) ① 미납구세의 열람신청은 임차인이 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가족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6조(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 ① ~ ③ (생략)
④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한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에 오류가 있거나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한 이

-----일반우편-----

-----.

-----.

제11조(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 고지서 송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대해서-----

-----.

제14조(미납구세 등의 열람) ① -----
-----법 제64조에 따라-----.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새로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에 제공한 결손 및 채납 처분자료를 정정하도록 신용정보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17조(배분금전의 예탁 등) ①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법 제72조에 따라 구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때에는 그 뜻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서에는 배분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9조(구세환급금의 총당 등) ① (생략)

②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구세환급금을 총당하는 때의 총당순서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제23조(징수유예 등의 취소) 법 제84조에 따라 징수유예 등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에 관련된 구세를 한꺼번에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고지를 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총금액을 한꺼번에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새로-----

-----.

1. ~ 3. (현행과 같음)

제17조(교부금전의 예탁 등) ① 교부-----

-----.

② -----예탁한 경우-----

-----.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구세환급금의 총당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총당하는 경우-----
-----.

제23조(징수유예 등의 취소) -----

-----징수할 수 있다.-----

-----.

제24조(납세담보의 요구) 구청장은
법 제26조제2항 및 제82조에 따라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
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납세담보
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1. 법 제80조제1항제1호의 사유
로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를 하
는 경우

2. · 3. (생략)

제25조(납세담보물의 보관) ① 세무
공무원은 납세담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증서 등을 견고
한 금고에 넣어 보관하여야 하며,
금고가 없는 경우에는 구금고에 의
뢰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현금·유가증권의 공탁수령증

2. 국채·지방채의 등록필증서

3. 금융회사의 지급보증서

4. · 5. (생략)

6. 토지·건물·공장재단·광업재
단·선박·항공기 및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을 필한 등
기필증 또는 등록필증

<신설>

제24조(납세담보의 요구) -----

-----.

1. 영 제8조의제2항 -----

2. · 3. (현행과 같음)

제25조(납세담보물의 보관) ① ----

-----.

1. -----공탁영수증

2. -----등록확인증

<삭제>

3. · 4.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
음)

<삭제>

5. 토지·건물·공장재단·광업재

② (생 략)

제29조(수색) ① ~ ③ (생 략)

④ 주로 야간에 영위하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영업소에 대하여는 해가 진 후라도 영업 중에 한하여 수색을 개시할 수 있다. 다만, 주거시설에 대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39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①

• ② (생 략)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 공보에 게재하거나 구 게시판에
10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4장 보칙

제4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1

조에 대한 사항을 각각 심사 또는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8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단 · 선박 · 항공기 및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을 필한 등
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
록확인증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수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대해서 -----

-----.

-----.

제39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1개월간 -----.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소집시 위원장의 위원 지명은 문서로 한다.

제4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전문가

· 청구인 · 참고인 또는 관계공무

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증빙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법

제116조제3항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

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결정

할 수 있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위원회업무담당자로 하며,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위원장은 위원회의 회

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

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

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

다.

제50조(심사·의결) ① 위원장은 표

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

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심사 또는 심의·의결

한 안건에 대한 결정 사항을 구청

장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때

2.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

납한 때

4. 위원 품위를 손상한 때

[참고자료]

□ 지방세기본법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⑥ 일반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송달장소
4. 발송연월일
5. 서류의 주요 내용

제64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그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지방세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열람신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지방세는 임대인의 체납액,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가 되지 아니한 지방세,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지방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지방세로 한정한다.

제72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그 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 의하여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제84조(징수유예등의 취소) ① 제80조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징수유예등을 취소하고 그 징수유예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제85조(담보의 종류)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6. 토지
7. 보험에 든 등기되거나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제87조(담보의 제공방법) ①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이를 공탁하고 그 공탁영수증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국채·지방채 또는 사채(社債)의 경우에는 담보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그 등록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토지, 주택, 주택 외 건물,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또는 공장재단·광업재단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확인증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따라 저당권의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98조(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 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가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 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제61조 및 제112조의2에서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 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 따른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
5.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에 한정한다)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기한연장시 담보 제공의 예외 사유)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담보 제공을 요구할 경우 그 담보의 종류 등에 관하여는 법 제4장제5절을 준용한다.

②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5조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112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국세징수법

제85조(채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채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제87조에 따른 국세채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5-118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7월 24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1. 개정이유**

○ 「지방세법」 개정으로 등록면허세 세율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 개정애 따라 반복적인 조례 개정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 조문 정비(안 제5조)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을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로 적용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세무1과(전화 : 032-453-2360 FAX : 032-453-23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5년 8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지방세법」 개정으로 등록면허세 세율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반복적인 조례 개정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 조문 정비(안 제5조)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을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로 적용
-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지방세법」 제28조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을 적용세율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당하는 때”를 “해당 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증감한 때”를 “증감한 경우”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당하는 때”를 “해당 하는 경우”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당하는 때”를 “해당 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항공기를 취득한 경우

제25조제2항제1호 중 “새로이”를 “새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상시”를 “평상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세율) <u>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1. <u>소유권의 보존 등기 :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세액이 3천원 미만일 때에는 3천원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u> 2. <u>소유권의 이전 등기</u> 가. <u>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u> 나. <u>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 다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로 한다.</u> 3. <u>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u> 가. <u>지상권 :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u> 다만, <u>구분지상권의 경우에는 해당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사용에 따른 건축물의 이용저해율(利用沮害率), 지하 부분의 이용저해율 및 그 밖의 이용저해율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산정한 해당 토지 가액의 1천분의 2로 한다.</u> 나. <u>저당권 : 채권금액의 1천분의 2</u> 다. <u>지역권 : 요역지(要役地) 가액의 1천분의 2</u>	제5조(세율) <u>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을 적용세율로 한다.</u>

라. 전세권 :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마. 임차권 :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

4.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가.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나. 가등기 :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5. 그 밖의 등기 : 건당 6천원

제15조(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 ①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략)

6.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7. (생략)

② (생략)

제16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

제15조(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 ① -----

-----해당 하는 경우-----

1. ~ 5. (현행과 같음)

6. -----증감한 경우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해당하는 경우-----

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략)

제17조(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연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공기를 취득한 때

2. ~ 5. (생략)

제25조(신고의무)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하였을 때

2. 3. (생략)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1. ~ 5. (현행과 같음)

제17조(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 -----

-----**해당**

하는 경우 -----

-----,

-----.

1. 항공기를 취득한 경우

2. ~ 5. (현행과 같음)

제25조(신고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새로** -----

2. 3. (현행과 같음)

4. **평상시** -----

[참고자료]

□ 지방세법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부동산 등기

가. 소유권의 보존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는 6천원으로 한다. 이하 나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같다)

나. 소유권의 이전 등기

1)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

2)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 다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로 한다.

다.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1) 지상권: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다만, 구분지상권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사용에 따른 건축물의 이용저해율(利用沮害率), 지하 부분의 이용저해율 및 그 밖의 이용저해율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해당 토지 가액의 1천분의 2로 한다.

2) 저당권: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3) 지역권: 요역지(要役地) 가액의 1천분의 2

4) 전세권: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5) 임차권: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

라.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1)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2) 가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마. 그 밖의 등기: 건당 6천원

2. ~ 14. (생략)

② ~ ⑤ (생략)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5-118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7월 24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개정이유

- 「지방세법」 개정으로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권리헌장 등에 대한 규정이 「지방세기본법」으로 이관되어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인용 법률 정비
 - 지방세법 제71조의2 → 지방세기본법 제106조 (안 제1조)
 - 지방세법 제72조 →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안 제20조)
 - 지방세법 제65조 → 지방세기본법 제105조 (안 제105조)
 - 지방세법 → 지방세기본법 (안 제2조, 제12조, 제14조)등록에 대한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세무1과(전화 : 032-453-2360 FAX : 032-453-23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5년 8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지방세법」 개정으로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권리헌장 등에 대한 규정이 「지방세기본법」으로 이관되어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인용 법률 정비
 - 지방세법 제71조의2 → 지방세기본법 제106조 (안 제1조)
 - 지방세법 제72조 →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안 제20조)
 - 지방세법 제65조 → 지방세기본법 제105조 (안 제105조)
 - 지방세법 → 지방세기본법 (안 제2조, 제12조, 제14조)
-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지방세기본법」 제105조, 제106조, 제117조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법」 제7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세기본법」 제106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당해직급”을 “해당 직급”으로 한다.

제5조제5호 중 “제1호 내지”를 “제1호부터”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1항제1호 내지”를 “제1항제1호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4조의 규정”을 “제24조”로, “제43조의 규정”을 “제43조”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제13조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 내지”를 “제1호부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행정소송법」”을 “「행정소송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제15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8조 후단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20조 중 “「지방세법」 제72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17조”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직권시정요구대상(제7조제1항제1호 내지”를 “직권시정요구대상(제7조제1항제1호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기타 제1호 내지”를 “그 밖에 제1호부터”로 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29조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2조제5항 본문 중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3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34조제3항 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호에 따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지방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거”를 “「지방세기본법」 제105조에 따라”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제3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8조에 따라”로, “기타”를 “그 밖”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납세자보호관및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배치 운영하여 납세자 권익보호업무를 전담수행하게 함으로써 납세자의권익이 침해 되지 않도록 하며 공정과세 행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세기본법」 제106조에 따라 ----- ----- ----- ----- ----- -----.
제2조(정의) ① (생략) ② 제1항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및 「국세기본법」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지방세기본법」 ----- ----- -----.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①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요건을 구비한 자를 세무부서의 장의 추천을 받아 납세자보호관의 적격여부에 대한 감사부서의 의견을수렴하여 임명한다. 다만, 인력수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2호의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생략) 2. 경력기준 : <u>당해직급</u> 세무경력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①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 <u>해당 직급</u> -----

5년 이상

3. (생략)

② (생략)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납세자 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4. (생략)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불합리한 지방세행정 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표명에 관한 사항

제6조(세무부서장의 고충민원처리 특례)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부서장이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제3장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며, 고충민원을 처리한 후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생략)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권한은 『과세처분·세무조사중지명령 및 시정·소명요구서(별지1호 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세무부서장에게 행사한다.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

-----.

1. ~ 4. (현행과 같음)

5. 제1호부터 -----

제6조(세무부서장의 고충민원처리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

-----.

제7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부터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중지·세무조사의 중지·처분의 시정·처분의 소명을 요구받은 해당 세무부서장 등은 과세처분의 중지 등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5호의 권한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행사하고, 같은 항제6호의 권한은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행사한다.

제12조(고충민원 처리준칙) ① 지방세공무원은 「지방세법」에 의한 불복절차 등을 경유하지 아니하고도 직권시정이 가능한 세금과 관련된 고충은 신속하게 시정조치함으로써 국민이 지방세행정에 대하여 신뢰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13조(고충민원의 대상) 고충민원의 대상은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충사항을 대상으로 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략)

7. 기타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되어 시정과 도움이 필요한

③ 제2항에 따라 -----

--.

④ -----제24조

-----제43조 -----
-----.

제12조(고충민원 처리준칙) ① ---
-----「지방세기본법」-----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고충민원의 대상) -----

-----.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

모든 애로 및 고충사항

제14조(고충민원의 제외대상)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고충민원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인이 새로운 증빙 또는 거증자료를 첨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처분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고충민원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지방세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의한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2.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전적 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3. ~ 5. (생략)

② (생략)

제15조(고충민원의 분류) 구청장이 처리하여야 할 고충민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1. · 2. (생략)

3. 기타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 ③ (생략)

제14조(고충민원의 제외대상) ① -

-----제1호부터-----

1. 「지방세기본법」-----

2. 「지방세기본법」-----

3.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고충민원의 분류) -----

1.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제17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조사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고충처리기한연장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한연장사유, 현지조사 등의 소요일수, 처리예정기한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신청의 취하) 민원인은 고충 내용에 대한 구청장의 결정이 있기 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고충민원의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20조(불복대상에서 제외)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지방세법」 제72조에 규정하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23조(해당 세무부서 의견조회)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세무부서장은 당해 고충민원의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의견서를 작성한 후 당초 처분에 관한 서류사본을 첨부하여 의견조회를

④ 제2항에 따라 -----

-----.

제18조(신청의 취하) -----

-----.

--대해서 -----
-----.

제20조(불복대상에서 제외) -----
-----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

-----.

제23조(해당 세무부서 의견조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
-----해당 -----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및 처리결과 통보서(별지 5호 서식)』에 의하여 그 의견을, 직권시정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현지조사 및 과세자료 제출
열람)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
원 신청내용과 세무부서의 고충민
원에 대한 의견 회보내용 등을 검
토한 결과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실
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현지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1. · 2. (생략)

3. 기타 필요한 물건 · 사람 · 장소

그 밖의 상황을 확인하는 일

제25조(고충민원의 구분) ① 납세자 보호관은 고충민원 청구내용과 세무부서 등의 회보내용 및 실시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충민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직권시정요구대상(제7조제1항

[illegible]제24조(현지조사 및 과세자료 제출
열람) ① -----

-----대 해 서-----
-----.

② _____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

제25조(고충민원의 구분) ① ----

1. 직권시정요구대상(제7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권한과 관련된 것)

2. ~ 4. (생략)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직권시정 요구대상으로 한다.

1. ~ 6. (생략)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과 유사하다고 인정되거나 예상되는 사항

③ ~ ⑤ (생략)

제27조(위원회 회부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1. · 2. (생략)

3. 기타 구청장이 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도록 지시한 경우

제28조(처리결과 통지) ① · ② (생략)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구술또는 전화로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상세히 알려 주어야 한다.

제29조(사후관리) 납세자보호관은 제32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제1호부터 -----

2. ~ 4. (현행과 같음)

② -----
-----.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제1호부터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7조(위원회 회부대상) -----
-----대해서 -----
-----.

1.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

제28조(처리결과 통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제2항에 따라 -----

-.

제29조(사후관리) -----
----- 제2항에 따라 -----

통지 또는 보고한 후 전화로 통지
서 수령여부, 처리내용의 이해여
부,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여부 등
을 확인하여야 하며, 민원인이 처
리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납득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
여야 한다.

제30조(파생자료의 통보 등) ① (생
략)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의 처
리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위법 부
당하게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징계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구청장
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1조(위원회 심의자료의 작성 및
배부)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위원회에 회부할 심의자료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당해 위원들
에게 배부한다.

제32조(위원회 구성) ① ~ ④ (생
략)

⑤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촉장을 수여한다. 다만,
당해 위원이 그 직무 수행에 지장

-----.

제30조(파생자료의 통보 등) ① (현
행과 같음)

② -----

-----그 밖의-----
-----.

제31조(위원회 심의자료의 작성 및
배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

-----해당-----
-----.

제32조(위원회 구성) ① ~ ④ (현
행과 같음)

⑤ -----제4호에 따라-----

-----.
해당-----

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 보호담당이 된다.

제33조(위원회 운영) ① ~ ④ (생략)

⑤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충내용에 대한 심의로부터 제척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제척원인이 있는 위원에 대하여 당해 고충내용 심의시 참석을 회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⑥ ~ ⑧ (생략)

⑨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⑩ · ⑪ (생략)

제34조(위원회 의결) ① · ② (생략)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위원회 의결서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결의 등 필

-----.

⑥ -----

-제2항에 따라 -----
-----.

제33조(위원회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해당 -----
-----.

-----해당 -----
-----.

1. ~ 3. (현행과 같음)

⑥ ~ ⑧ (현행과 같음)

⑨ -----
-----대해서 -----
-----.

⑩ · ⑪ (현행과 같음)

제34조(위원회 의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호에 따라 -----

요한 후속조치를 취한 후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및 고충처리결과통보서(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납세자권리헌장 제정) ① 구
청장은 「지방세법」 제65조의 규
정에 의거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
· 고시하여 납세자에게 납세자로
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생략)

제44조(지방세 제도개선 의견) ①
(생략)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38조의 규정
에 의한 세무상담 과정 등에서 수
집된 납세자 여론·정보로서 세법
등 관련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지
방세 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제
1항과 같이 처리하고, 기타의 납
세자 여론·정보는 세무부서 및
관련부서로 통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_____.

제41조(납세자권리헌장 제정) ① -
 --- 「지방세기본법」 제105조에
 따라 -----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지방세 제도개선 의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38조에 따라

-----그 밖 -----

[참고자료]**□ 지방세기본법**

제105조(납세자권리현장의 제정 및 교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7조부터 제115조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현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06조(납세자보호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현장의 준수 및 이행 여부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7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5-118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7월 24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제정이유

- 아동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아동복지 관련 유사한 위원회를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아동복지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용어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 아동위원 구성, 임기, 역할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8조)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기능, 임기, 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3조)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회의, 위원 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7조)
- 자료제출, 우선조치, 비밀누설 금지,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안 제18조~제2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가정복지과장)에게 전화 또는 FAX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633 남동구청(가정복지과)/

☎ 453-5864, FAX 453-586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4. 제정 조례(안) : 별첨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5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아동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아동복지 관련 유사한 위원회를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아동복지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용어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 아동위원 구성, 임기, 역할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8조)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기능, 임기, 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제13조)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회의, 위원 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7조)
- 자료제출, 우선조치, 비밀누설 금지,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안 제18조~제22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아동복지법」 제14조
-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위원 운영 조례」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호대상 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 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제2장 아동위원

제3조(아동위원)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라 아동위원을 둔다.

제4조(아동위원의 구성) 아동위원의 정수는 동 별로 각 1명이상으로 한다.

제5조(아동위원의 위·해촉) ①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② 구청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아동위원을 즉시 해촉한다.

1.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직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제6조(아동위원의 임기)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이내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아동위원의 역할) ①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관할 구역 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원조와 지도
3. 아동복지에 관하여 전담공무원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4.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 시 동 주민센터 또는 구에 알림
5.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자문 등

② 아동위원은 역할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아동위원의 수당 등)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제9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청장은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심의사항에 따라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당연직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과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

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의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7.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이내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을 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2.위원의 심의 업무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때
- 3.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14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이 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계된 기관에 소속된 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 한다.

제17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8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에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9조(우선조치) 구청장은 제6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한 경우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20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 활동 중인 아동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위원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참고자료]**□ 아동복지법****제12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1.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 (아동위원)

- ① 시·군·구에 아동위원을 둔다.
- ② 아동위원은 그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전담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 ③ 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④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3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된다.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6.11 제25375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시·도 교육청(시·군·구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위원 운영 조례

(제정) 2003.07.04 조례 제 70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아동위원(이하"아동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아동위원의 정수) 아동위원의 정수는 각 동에 1인 이상으로 한다.

제3조(아동위원의 역할) ① 아동위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도
3.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발생 즉시 구 또는 동에 알림
4. 소년소녀가정의 보호 및 지원
5. 기타 아동복지에 관한 자문 등

② 아동위원은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구 및 동의 아동복지업무 담당자와 상호협조 하고, 역할수행 중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며, 아동위원으로서의 품위를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위원의 위촉) ① 아동위원은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관할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관할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와 관심이 있는 자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구청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아동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활동미진 등으로 아동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아동위원의 임기) ① 아동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3회이상 연임할 수 없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수당 등)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5-118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7월 24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개정이유

- 2015년 자치법규 일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과 불 합치한 규정을 반영하고, 지역아동센터 위원회를 아동복지 관련 유사위원회 대행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을 체계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 법령과 불 합치한 조항 개정 (안 제1조, 제2조)
-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유사기능 위원회 대행 규정 신설 (안 제8조제2항)
 - 지역아동센터위원회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가정복지과장)에게 전화 또는 FAX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633 남동구청(가정복지과)/

☎ 453-5864, FAX 453-586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4. 개정 조례(안) : 별첨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5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2015년 자치법규 일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과 불 합치한 규정을 반영하고, 지역아동센터 위원회를 아동복지 관련 유사위원회 대행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을 체계화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위 법령과 불 합치한 조항 개정 (안 제1조, 제2조)
-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유사기능 위원회 대행 규정 신설 (안 제8조 제2항)
 - 지역아동센터위원회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아동복지법 제3조, 제52조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아동복지법」 제4조에 의거”를 “「아동복지법」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6조제1항제11호”를 “제52조제1항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의”를 “당연직 위원은 지역아동센터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다.

제9조제3항 중 “인정하는 때”를 “인정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의거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신고된 지역 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의거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신고된 지역 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아동복지법」에 따라 ----- ----- ----- -----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 -----.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1.	-----	-----제3조제1호에 따른 ----- -----.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	-----제52조제1항제8호 ----- ----- ----- ----- -----.
3. (생략)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보호, 상담지도, 교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보호, 상담지도, 교	4.	-----	-----

육, 기타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생 략)

제7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 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업무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

3. ~ 6. (생 략)

7. 기타 복지관련 전문가

④ ~ ⑤ (생 략)

제8조(위원회의 기능) (생 략)

<신 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② (생 략)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

-----그 밖에-----

5. (현행과 같음)

제7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지역아동센터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삭 제>

2.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3.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생략)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인정하는 경우-----

-----.

④ (현행과 같음)

⑤ -----

-----그 밖에-----

-----.

[참고자료]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시행일 2014.9.29]]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7의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8.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9. “아동복지전담기관”이란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과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이하 “가정위탁지원센터

터”라 한다)를 말한다.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 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나. 정서적·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치료하는 시설

4.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각 시설 고유의 목적 사업을 해치지 아니하고 각 시설별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1. 아동가정지원사업: 지역사회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아동, 가정, 지역주민에게 상담,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사업
2. 아동주간보호사업: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에서 낮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3. 아동전문상담사업: 학교부적응아동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한 상담, 치료 및 학교폭력예방을 실시하는 사업
4. 학대아동보호사업: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아동학대의 예방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5. 공동생활가정사업: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6. 방과 후 아동지도사업: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 2015-44호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내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말소 사항을 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15. 08. 04.
3. 처 분 근 거 법 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4. 공 고 기 간 : 2015. 07. 24. ~ 2015. 08. 03. (11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비고 (말소예정일)
일반 음식점	2011- 0200109	구이마루	김*숙	백범로180번길 77 (만수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4.12.31.	2015.08.04.

6. 고 지 사 항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정당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남동구청장) 또는 재결청(인천광역시장)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 ☎ (032)453-2626

2015. 07. 24.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보 건 소 장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5-97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서창 제7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서창 제7주차장】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인가(변경)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453-2953) 및 건축과(☎453-277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5. 7. 22.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31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서창 제7주차장)
- 명 칭 : 서창 제7주차장 공사

3. 사업의 규모(변경)

【기 정】

- 토지면적 1,949.0㎡, 연면적 7627.95㎡, 건축면적 1,549.40㎡, 주차장 107대
- 세부 연면적(단위:㎡)

	합 계	1층	2층	3층	4층	5층
주차면적	5,400.29	575.86	739.92	1,498.68	1,498.68	1,087.15
근생면적	1,752.86	753.66	707.92	-	-	291.28
공용면적	474.80	153.21	101.56	28.36	28.36	163.31

【변 경】

- 토지면적 1,949.0㎡, 연면적 7,632.79㎡, 건축면적 1,551.94㎡, 주차장 99대
- 세부 연면적(단위:㎡)

	합 계	1층	2층	3층	4층	5층
주차면적	4,958.77	133.32	740.22	1,498.97	1,498.97	1,087.29
근생면적	2,101.09	1,109.11	707.92	-	-	284.06
공용면적	572.93	250.38	96.22	28.06	28.06	170.21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 이경화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30번길 32, 203동 1005호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
- 준공예정일 : 2015. 10.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기 정】

소재지	지목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권리종류	성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31번지	주차장	1,949.0	1,949.0	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번길 **, ***동 ****호	해당 없음		

【변 경】

소재지	지목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권리종류	성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31번지	주차장	1,949.0	1,949.0	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번길 **, ***동 ****호	근저당권	(주) 국**행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5-98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등에 부여 및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2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207번길 12-9 외 1건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484번길 8-7 외 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램(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램(4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0)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7. 22.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으로 도로명주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 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0-13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20 7번길	12-9	2009.11.16	석산로의시작지점에서부 터약2080m지점에서왼 쪽으로분기하는도로	2015.7.22.	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석산 로207번길12-9번 기초구간에위치하여12-9 를건물번호로부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56-4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 653번길	41	2009.11.16	앵고개의시작지점에서 부터약6540m지점에서 왼쪽으로분기하는도로	2015.7.22.	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앵고 개로653번길41번 기초구간에위치하여41을건 물번호로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120-3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484번길	8-7	2015.7.17.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143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484번길	8-26	2015.7.17.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144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484번길	8-31	2015.7.17.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4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312-2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697번길	31	2015.7.17.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 2015-99호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고시

제22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15. 7. 21)에서 의결, 확정된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2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2015년도 추경 2 회 회계별 예산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564,655,493	100.00%	547,731,256	100.00%	16,924,237	3.09%
일반회계		530,727,280	93.99%	514,603,262	93.95%	16,124,018	3.13%
특별회계		33,928,213	6.01%	33,127,994	6.05%	800,219	2.42%
기타특별회계		33,928,213	6.01%	33,127,994	6.05%	800,219	2.42%
소래논현구역도시개발사업지구 내공공시설관리특별회계		7,640,280	1.35%	7,640,280	1.39%	0	0.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84,968	0.14%	784,968	0.14%	0	0.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6,830	0.00%	16,830	0.00%	0	0.00%
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		10,015,779	1.77%	10,015,779	1.83%	0	0.00%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81,715	0.03%	181,715	0.03%	0	0.00%
도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 회계		735,000	0.13%	735,000	0.13%	0	0.00%
기반시설특별회계		59,000	0.01%	59,000	0.01%	0	0.00%
주차장특별회계		14,494,641	2.57%	13,694,422	2.50%	800,219	5.84%

2. 일반회계

세 입

(단위 : 천원)

장 · 관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 성 비		구 성 비		증 감 률
총 계	530,727,280	100.00 %	514,603,262	100.00 %	16,124,018	3.13%
100 지방세 수입	103,792,000	19.56 %	103,792,000	20.17 %	0	0.00%
110 지방세	103,792,000	19.56 %	103,792,000	20.17 %	0	0.00%
200 세외수입	39,484,222	7.44 %	38,694,234	7.52 %	789,988	2.04%
210 경상적세외수입	29,399,644	5.54 %	28,930,644	5.62 %	469,000	1.62%
220 임시적세외수입	10,084,578	1.90 %	9,763,590	1.90 %	320,988	3.29%
300 지방교부세	4,200,000	0.79 %	3,700,000	0.72 %	500,000	13.51%
310 지방교부세	4,200,000	0.79 %	3,700,000	0.72 %	500,000	13.51%
400 조정교부금등	41,456,989	7.81 %	40,656,989	7.90 %	800,000	1.97%
410 자치구조정교부금등	41,456,989	7.81 %	40,656,989	7.90 %	800,000	1.97%
500 보조금	293,975,054	55.39 %	293,114,110	56.96 %	860,944	0.29%
510 국고보조금등	201,523,654	37.97 %	201,684,980	39.19 %	△161,326	△0.08%
520 시·도비보조금등	92,451,400	17.42 %	91,429,130	17.77 %	1,022,270	1.12%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7,819,015	9.01 %	34,645,929	6.73 %	13,173,086	38.02%
710 보전수입등	47,814,864	9.01 %	34,645,929	6.73 %	13,168,935	38.01%
720 내부거래	4,151	0.00 %	0	0.00 %	4,151	순증

세 출 총 괄 표

2015년도 추경 2 회 일반회계 전체

【 성 질 별 】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 성 비		구 성 비		증 감 률
총 계	530,727,280	100.00%	514,603,262	100.00 %	16,124,018	3.13%
100 인건비	63,033,113	11.88%	63,411,166	12.32 %	△378,053	△0.60%
200 물건비	26,169,788	4.93%	25,554,565	4.97 %	615,223	2.41%
300 경상이전	359,898,059	67.81%	357,881,629	69.55 %	2,016,430	0.56%
400 자본지출	61,053,460	11.50%	58,464,386	11.36 %	2,589,074	4.43%
600 보전재원	250,000	0.05%	250,000	0.05 %	0	0.00%
700 내부거래	2,846,431	0.54%	2,596,431	0.50 %	250,000	9.63%
800 예비비및기타	17,476,429	3.29%	6,445,085	1.25 %	11,031,344	171.16%

세 출 총 괄 표

2015년도 추경 2 회 일반회계 전체

【 기 능 별 】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 성 비		구 성 비		증 감 률
총 계	530,727,280	100.00 %	514,603,262	100.00 %	16,124,018	3.13 %
010 일반공공행정	32,686,776	6.16 %	28,320,484	5.50 %	4,366,292	15.42 %
020 공공질서및안전	2,498,342	0.47 %	2,449,982	0.48 %	48,360	1.97 %
050 교육	6,866,806	1.29 %	6,816,054	1.32 %	50,752	0.74 %
060 문화및관광	11,080,561	2.09 %	12,056,767	2.34 %	△976,206	△8.10 %
070 환경보호	20,068,211	3.78 %	19,945,148	3.88 %	123,063	0.62 %
080 사회복지	306,377,218	57.73 %	305,136,963	59.30 %	1,240,255	0.41 %
090 보건	13,901,586	2.62 %	13,840,851	2.69 %	60,735	0.44 %
100 농림해양수산	3,730,952	0.70 %	3,936,165	0.76 %	△205,213	△5.21 %
110 산업·중소기업	4,646,425	0.88 %	4,336,125	0.84 %	310,300	7.16 %
120 수송및교통	18,570,180	3.50 %	15,372,659	2.99 %	3,197,521	20.80 %
140 국토및지역개발	22,950,104	4.32 %	23,575,222	4.58 %	△625,118	△2.65 %
160 예비비	12,306,996	2.32 %	3,444,085	0.67 %	8,862,911	257.34 %
900 기타	75,043,123	14.14 %	75,372,757	14.65 %	△329,634	△0.44 %

세 입 총 괄 표

2015년도 추경 2 회 기타특별회계 전체

(단위:천원)

장 · 관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 성 비		구 성 비		증 감 률
총 계	33,928,213	100.00 %	33,127,994	100.00 %	800,219	2.42%
200 세외수입	6,665,372	19.65 %	6,665,153	20.12 %	219	0.00%
210 경상적세외수입	3,311,722	9.76 %	3,311,722	10.00 %	0	0.00%
220 임시적세외수입	3,353,650	9.88 %	3,353,431	10.12 %	219	0.01%
400 조정교부금등	800,000	2.36 %	0	0.00 %	800,000	순증
410 자치구조정교부금등	800,000	2.36 %	0	0.00 %	800,000	순증
500 보조금	2,898,150	8.54 %	2,898,150	8.75 %	0	0.00%
510 국고보조금등	2,761,966	8.14 %	2,761,966	8.34 %	0	0.00%
520 시·도비보조금등	136,184	0.40 %	136,184	0.41 %	0	0.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3,564,691	69.45 %	23,564,691	71.13 %	0	0.00%
710 보전수입등	23,550,037	69.41 %	23,550,037	71.09 %	0	0.00%
720 내부거래	14,654	0.04 %	14,654	0.04 %	0	0.00%

세 출 총 괄 표

2015년도 추경 2 회 기타특별회계 전체

【 성 질 별 】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 성 비		구 성 비		증 감 률
총 계	33,928,213	100.00%	33,127,994	100.00 %	800,219	2.42%
100 인건비	767,316	2.26%	752,925	2.27 %	14,391	1.91%
200 물건비	915,971	2.70%	915,851	2.76 %	120	0.01%
300 경상이전	1,278,781	3.77%	1,278,781	3.86 %	0	0.00%
400 자본지출	10,598,920	31.24%	9,556,951	28.85 %	1,041,969	10.90%
700 내부거래	4,151	0.01%	4,151	0.01 %	0	0.00%
800 예비비및기타	20,363,074	60.02%	20,619,335	62.24 %	△256,261	△1.24%

세 출 총 괄 표

2015년도 추경 2 회 기타특별회계 전체

【 기 능 별 】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 성 비		구 성 비		증 감 률
총 계	33,928,213	100.00 %	33,127,994	100.00 %	800,219	2.42 %
010 일반공공행정	138,994	0.41 %	138,994	0.42 %	0	0.00 %
070 환경보호	10,015,779	29.52 %	10,015,779	30.23 %	0	0.00 %
080 사회복지	541,320	1.60 %	541,320	1.63 %	0	0.00 %
120 수송및교통	13,845,580	40.81 %	13,059,752	39.42 %	785,828	6.02 %
140 국토및지역개발	8,632,825	25.44 %	8,632,825	26.06 %	0	0.00 %
900 기타	753,715	2.22 %	739,324	2.23 %	14,391	1.95 %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5-100호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고시

제22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15.07.21.)에서 의결, 확정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지방자치법 제134조 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3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201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총괄

(단위:원)

구 분	예산현액 ㉠	결 산						현년도 채무상환	다음연도이월내역					
		세입㉡	㉢/㉡	세출㉣	㉤/㉣	차인잔액㉥ (㉢-㉣)	㉦/㉥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합 계	570,903,037,253	583,740,681,828	102 %	485,189,150,099	85 %	98,551,531,729	17 %		98,551,531,729	15,166,935,990	5,141,910,400	3,080,418,000	4,495,897,445	70,666,369,894
일 반 회 계	529,348,634,653	541,242,032,711	102 %	471,747,679,877	89 %	69,494,352,834	13 %		69,494,352,834	14,443,052,990	5,079,445,120	800,000,000	4,483,240,525	44,688,614,199
특 별 회 계	41,554,402,600	42,498,649,117	102 %	13,441,470,222	32 %	29,057,178,895	70 %		29,057,178,895	723,883,000	62,465,280	2,280,418,000	12,656,920	25,977,755,695
기타특별회계	41,554,402,600	42,498,649,117	102 %	13,441,470,222	32 %	29,057,178,895	70 %		29,057,178,895	723,883,000	62,465,280	2,280,418,000	12,656,920	25,977,755,695
소래논현구역도시개발사업지구내공공시설관리특별회계	11,501,870,500	11,451,321,550	100 %	3,809,475,270	33 %	7,641,846,280	66 %		7,641,846,280		52,673,280			7,589,173,0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65,409,000	770,521,738	101 %	651,829,330	85 %	118,692,408	16 %		118,692,408				11,100,920	107,591,488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6,430,000	16,463,019	100 %	14,873,000	91 %	1,590,019	10 %		1,590,019				1,556,000	34,019
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	9,823,466,000	9,834,706,188	100 %			9,834,706,188	100 %		9,834,706,188					9,834,706,188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74,715,000	177,542,120	102 %	1,500,000	1 %	176,042,120	101 %		176,042,120					176,042,120
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800,000	1,718,121	95 %	1,718,121	95 %									
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90,000,000	187,022,987	98 %	187,022,987	98 %									
도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888,376,000	918,434,198	103 %	256,406,520	29 %	662,027,678	75 %		662,027,678					662,027,678
기반시설특별회계	261,875,100	263,044,304	100 %	190,837,150	73 %	72,207,154	28 %		72,207,154					72,207,154
주차장특별회계	17,930,461,000	18,877,874,892	105 %	8,327,807,844	46 %	10,550,067,048	59 %		10,550,067,048	723,883,000	9,792,000	2,280,418,000		7,535,974,048

※ 자금없는이월액은다음연도이월액에포함하지아니하고()로 별도 표시

(1) 세입결산총괄

(단위:원)

구 분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	미수납액처리		비율(%)	
					수납총액 ①	과오납 반환액②	실제수납액 ③=①-②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③/㉣	③/㉤
합 계	546,521,667,000	24,381,370,253	570,903,037,253	632,479,751,277	585,360,478,298	1,619,796,470	583,740,681,828	48,739,069,449	4,398,090,730	44,340,978,719	102.2 %	92.3 %
일 반 회 계	506,819,482,000	22,529,152,653	529,348,634,653	580,388,271,670	542,858,722,031	1,616,689,320	541,242,032,711	39,146,238,959	4,193,609,530	34,952,629,429	102.2 %	93.3 %
지방세수입	104,127,213,000		104,127,213,000	114,162,260,850	107,038,029,440	421,117,240	106,616,912,200	7,545,348,650	61,768,160	7,483,580,490	102.4 %	93.4 %
보통세	102,146,804,000		102,146,804,000	107,459,150,460	104,827,704,160	331,487,860	104,496,216,300	2,962,934,160		2,962,934,160	102.3 %	97.2 %
지난년도수입	1,980,409,000		1,980,409,000	6,703,110,390	2,210,325,280	89,629,380	2,120,695,900	4,582,414,490	61,768,160	4,520,646,330	107.1 %	31.6 %
세외수입	38,515,922,000		38,515,922,000	71,580,411,730	40,095,737,101	116,215,680	39,979,521,421	31,600,890,309	4,131,841,370	27,469,048,939	103.8 %	55.9 %
경상적세외수입	26,222,425,000		26,222,425,000	28,149,366,262	27,955,043,262	10,880,140	27,944,163,122	205,203,140		205,203,140	106.6 %	99.3 %
임시적세외수입	12,293,497,000		12,293,497,000	43,431,045,468	12,140,693,839	105,335,540	12,035,358,299	31,395,687,169	4,131,841,370	27,263,845,799	97.9 %	27.7 %
지방교부세	7,175,172,000		7,175,172,000	8,156,115,000	9,156,115,000	1,000,000,000	8,156,115,000				113.7 %	100.0 %
지방교부세	7,175,172,000		7,175,172,000	8,156,115,000	9,156,115,000	1,000,000,000	8,156,115,000				113.7 %	100.0 %
조정교부금및재정보조금	50,693,384,000		50,693,384,000	54,628,555,000	54,628,555,000		54,628,555,000				107.8 %	100.0 %
조정교부금	50,693,384,000		50,693,384,000	54,628,555,000	54,628,555,000		54,628,555,000				107.8 %	100.0 %
보조금	272,101,525,000		272,101,525,000	271,467,008,870	271,546,365,270	79,356,400	271,467,008,870				99.8 %	100.0 %
국고보조금등	180,621,410,000		180,621,410,000	180,506,881,900	180,539,303,900	32,422,000	180,506,881,900				99.9 %	100.0 %
시·도비보조금등	91,480,115,000		91,480,115,000	90,960,126,970	91,007,061,370	46,934,400	90,960,126,970				99.4 %	100.0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4,206,266,000	22,529,152,653	56,735,418,653	60,393,920,220	60,393,920,220		60,393,920,220				106.4 %	100.0 %
보전수입등	34,162,955,000	22,529,152,653	56,692,107,653	60,350,609,610	60,350,609,610		60,350,609,610				106.5 %	100.0 %
내부거래	43,311,000		43,311,000	43,310,610	43,310,610		43,310,610				100.0 %	100.0 %
특 별 회 계	39,702,185,000	1,852,217,600	41,554,402,600	52,091,479,607	42,501,756,267	3,107,150	42,498,649,117	9,592,830,490	204,481,200	9,388,349,290	102.3 %	81.6 %
기타특별회계	39,702,185,000	1,852,217,600	41,554,402,600	52,091,479,607	42,501,756,267	3,107,150	42,498,649,117	9,592,830,490	204,481,200	9,388,349,290	102.3 %	81.6 %
소래논현구역도시개발 사업지구내공공시설관 리특별회계	10,627,738,000	874,132,500	11,501,870,500	11,451,321,550	11,451,321,550		11,451,321,550				99.6 %	100.0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65,409,000		765,409,000	1,470,267,858	770,521,738		770,521,738	699,746,120	119,197,300	580,548,820	100.7 %	52.4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 업 특별회계	16,430,000		16,430,000	16,463,019	16,463,019		16,463,019				100.2 %	100.0 %
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 별회계	9,823,466,000		9,823,466,000	9,834,706,188	9,834,706,188		9,834,706,188				100.1 %	100.0 %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74,715,000		174,715,000	190,722,820	177,542,120		177,542,120	13,180,700		13,180,700	101.6 %	93.1 %
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 사업특별회계	1,800,000		1,800,000	1,718,121	1,718,121		1,718,121				95.5 %	100.0 %
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 사업특별회계	190,000,000		190,000,000	187,022,987	187,022,987		187,022,987				98.4 %	100.0 %

(2) 세출결산총괄

(단위:원)

과 목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합 계	546,521,667,000	24,381,370,253	570,903,037,253	492,647,922,099	485,189,150,099	23,389,264,390	15,166,935,990	5,141,910,400	3,080,418,000	62,324,622,764
일 반 회 계	506,819,482,000	22,529,152,653	529,348,634,653	479,015,332,237	471,747,679,877	20,322,498,110	14,443,052,990	5,079,445,120	800,000,000	37,278,456,666
일반공공행정	32,566,281,000	5,729,591,380	38,295,872,380	34,590,928,941	34,590,691,561	132,524,770	100,000,000	32,524,770		3,572,656,049
공공질서및안전	2,937,423,000	804,492,640	3,741,915,640	3,214,039,550	3,214,039,550	340,000,000	340,000,000			187,876,090
교육	11,578,239,000	55,063,580	11,633,302,580	11,550,666,199	11,550,666,199					82,636,381
문화및관광	15,486,667,000	1,012,240,000	16,498,907,000	13,193,859,065	12,215,592,195	3,037,953,500	2,237,953,500		800,000,000	1,245,361,305
환경보호	20,266,534,000	842,153,150	21,108,687,150	19,509,687,167	19,509,687,167	399,058,310	399,058,310			1,199,941,673
사회복지	277,096,186,000	1,290,938,833	278,387,124,833	272,055,289,931	271,215,551,861	3,924,500,230	2,965,976,000	958,524,230		3,247,072,742
보건	12,620,439,000	151,740,000	12,772,179,000	12,241,132,060	12,241,132,060					531,046,940
농림해양수산	3,474,611,000	110,160,970	3,584,771,970	2,920,454,550	2,920,454,550	39,000,000	39,000,000			625,317,420
산업·중소기업	5,211,854,000	744,149,640	5,956,003,640	5,214,275,499	4,078,600,349	1,453,966,700	1,453,966,700			423,436,591
수송및교통	15,652,097,000	4,183,637,320	19,835,734,320	14,982,675,093	13,504,540,623	5,967,390,210	4,501,256,190	1,466,134,020		363,803,487
국토및지역개발	16,403,112,000	7,604,985,140	24,008,097,140	19,529,540,580	16,693,960,160	5,028,104,390	2,405,842,290	2,622,262,100		2,286,032,590
예비비	21,481,145,000		21,481,145,000							21,481,145,000
기타	72,044,894,000		72,044,894,000	70,012,783,602	70,012,763,602					2,032,130,398
특 별 회 계	39,702,185,000	1,852,217,600	41,554,402,600	13,632,589,862	13,441,470,222	3,066,766,280	723,883,000	62,465,280	2,280,418,000	25,046,166,098
소래논현구역도시개발사업지구내공 공시설관리특별회계	10,627,738,000	874,132,500	11,501,870,500	3,862,148,550	3,809,475,270	52,673,280		52,673,280		7,639,721,95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65,409,000		765,409,000	651,829,330	651,829,330					113,579,67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6,430,000		16,430,000	14,873,000	14,873,000					1,557,000
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	9,823,466,000		9,823,466,000							9,823,466,000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74,715,000		174,715,000	1,500,000	1,500,000					173,215,000
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800,000		1,800,000	1,718,121	1,718,121					81,879
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90,000,000		190,000,000	187,022,987	187,022,987					2,977,013
도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888,376,000		888,376,000	256,406,520	256,406,520					631,969,480
기반시설특별회계	67,404,000	194,471,100	261,875,100	190,837,150	190,837,150					71,037,950
주차장특별회계	17,146,847,000	783,614,000	17,930,461,000	8,466,254,204	8,327,807,844	3,014,093,000	723,883,000	9,792,000	2,280,418,000	6,588,560,156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 2015-101 호

통반 구역조정 결정고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구역 조정내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 다 음 -

- 시 행 일 자 : 2015. 7. 31.부터 시행
- 통·반 구역 조정 내역 : “ 첨 부 ”

2015. 7. 24.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통 · 반 구역 조정현황

구 분	조정전		증감		조정후		비 고
	통	반	통	반	통	반	
남동구	656	3,692	1	△ 9	657	3,683	
구월1동	47	254	△ 12	△ 66	35	188	
구월3동	25	137	12	65	37	202	
만수2동	33	177	△ 2	△ 21	31	156	
만수4동	32	198	3	13	35	211	

통 · 반 구역 조정사유 및 내역

구월1동

현 행				조 정 후				비 고 (조정내역)
통	반	관 할 구 역	세대수	통	반	관 할 구 역	세대수	
24	소 계		49	24	소 계		47	동경계 조정에 따른 통·반 구역 현행화
	1	남동대로 614-1, 남동대로 620-1, 남동대로 622, 호구포로 725, 전재울로 30번길 59-5, 남동대로 626 남동대로 629 구월동 819-3 남동대로 686, 남동대로 682, 남동대로 692번길 14-6, 남동대로 692번길 14-8, 인하로 543번길 18, 18-1 인하로 543번길 16, 16-1	49		1	남동대로 614-1, 남동대로 620-1, 남동대로 622, 호구포로 725, 남동대로 626 남동대로 686, 남동대로 682, 남동대로 692번길 14-6, 남동대로 692번길 14-8, 인하로 543번길 18, 18-1 인하로 543번길 16, 16-1	47	
37	소 계		511	25	소 계		511	통명칭 변경
	1	구월동 A-1블록 101동 1 ~ 6호 구월동 A-1블록 102동 1호	68		1	구월동 A-1블록 101동 1 ~ 6호 구월동 A-1블록 102동 1호	68	
	2	구월동 A-1블록 102동 2 ~ 6호 구월동 A-1블록 103동 1,2호	66		2	구월동 A-1블록 102동 2 ~ 6호 구월동 A-1블록 103동 1,2호	66	
	3	구월동 A-1블록 103동 3 ~ 4호 구월동 A-1블록 104동 구월동 A-1블록 105동 1호	74		3	구월동 A-1블록 103동 3 ~ 4호 구월동 A-1블록 104동 구월동 A-1블록 105동 1호	74	
	4	구월동 A-1블록 105동 2 ~ 4호	60		4	구월동 A-1블록 105동 2 ~ 4호	60	
	5	구월동 A-1블록 106동 1 ~ 3호	85		5	구월동 A-1블록 106동 1 ~ 3호	85	
	6	구월동 A-1블록 106동 4,5호 구월동 A-1블록 107동 1호	82		6	구월동 A-1블록 106동 4,5호 구월동 A-1블록 107동 1호	82	
	7	구월동 A-1블록 107동 2 ~ 4호	76		7	구월동 A-1블록 107동 2 ~ 4호	76	

현행				조정후				비고 (조정내역)
통	반	관할구역	세대수	통	반	관할구역	세대수	
38	소 계		322	26	소 계		322	통명칭 변경
	1	구월동 A-2블록 201동 1 ~ 3호	73		1	구월동 A-2블록 201동 1 ~ 3호	73	
	2	구월동 A-2블록 201동 4호 구월동 A-2블록 202동 1,2호	79		2	구월동 A-2블록 201동 4호 구월동 A-2블록 202동 1,2호	79	
	3	구월동 A-2블록 202동 3,4호 구월동 A-2블록 203동 1호	85		3	구월동 A-2블록 202동 3,4호 구월동 A-2블록 203동 1호	85	
	4	구월동 A-2블록 203동 2 ~ 4호	85		4	구월동 A-2블록 203동 2 ~ 4호	85	
39	소 계		314	27	소 계		314	통명칭 변경
	1	구월동 A-2블록 204동 1 ~ 3호	74		1	구월동 A-2블록 204동 1 ~ 3호	74	
	2	구월동 A-2블록 204동 4,5호 구월동 A-2블록 205동 1호	60		2	구월동 A-2블록 204동 4,5호 구월동 A-2블록 205동 1호	60	
	3	구월동 A-2블록 205동 2 ~ 6호 구월동 A-2블록 206동 1호 구월동 A-2블록 206동 102호,202호	60		3	구월동 A-2블록 205동 2 ~ 6호 구월동 A-2블록 206동 1호 구월동 A-2블록 206동 102호,202호	60	
	4	구월동 A-2블록 206동 302호~1002호 구월동 A-2블록 206동 3,4호 구월동 A-2블록 207동 1 ~ 4호	60		4	구월동 A-2블록 206동 302호~1002호 구월동 A-2블록 206동 3,4호 구월동 A-2블록 207동 1 ~ 4호	60	
	5	구월동 A-2블록 207동 5,6호 구월동 A-2블록 208동	60		5	구월동 A-2블록 207동 5,6호 구월동 A-2블록 208동	60	
40	소 계		322	28	소 계		322	통명칭 변경
	1	구월동 B-1블록 501동 1 ~ 3호	81		1	구월동 B-1블록 501동 1 ~ 3호	81	
	2	구월동 B-1블록 501동 4호 구월동 B-1블록 502동 1,2호	80		2	구월동 B-1블록 501동 4호 구월동 B-1블록 502동 1,2호	80	
	3	구월동 B-1블록 502동 3,4호 구월동 B-1블록 503동 1호	80		3	구월동 B-1블록 502동 3,4호 구월동 B-1블록 503동 1호	80	
	4	구월동 B-1블록 503동 2 ~ 4호	81		4	구월동 B-1블록 503동 2 ~ 4호	81	
41	소 계		460	29	소 계		460	통명칭 변경
	1	구월동 B-1블록 504동 1 ~ 3호 구월동 B-1블록 504동 104호~904호	96		1	구월동 B-1블록 504동 1 ~ 3호 구월동 B-1블록 504동 104호~904호	96	
	2	구월동 B-1블록 504동 1004호~2004호 구월동 B-1블록 505동 1,2호 구월동 B-1블록 505동 103호~1903호	97		2	구월동 B-1블록 504동 1004호~2004호 구월동 B-1블록 505동 1,2호 구월동 B-1블록 505동 103호~1903호	97	
	3	구월동 B-1블록 505동 2003호~2003호 구월동 B-1블록 505동 4호 구월동 B-1블록 506동 1,2호	97		3	구월동 B-1블록 505동 2003호~2003호 구월동 B-1블록 505동 4호 구월동 B-1블록 506동 1,2호	97	
	4	구월동 B-1블록 506동 3,4호 구월동 B-1블록 507동 1호	87		4	구월동 B-1블록 506동 3,4호 구월동 B-1블록 507동 1호	87	
	5	구월동 B-1블록 507동 2 ~ 4호	83		5	구월동 B-1블록 507동 2 ~ 4호	83	
42	소 계		602	30	소 계		602	통명칭 변경
	1	구월동 B-2블록 601동	64		1	구월동 B-2블록 601동	64	
	2	구월동 B-2블록 602동	70		2	구월동 B-2블록 602동	70	
	3	구월동 B-2블록 603동 1 ~ 3호	85		3	구월동 B-2블록 603동 1 ~ 3호	85	
	4	구월동 B-2블록 603동 4호 구월동 B-2블록 604동 1,2호	85		4	구월동 B-2블록 603동 4호 구월동 B-2블록 604동 1,2호	85	
	5	구월동 B-2블록 604동 3,4호 구월동 B-2블록 605동 1호	84		5	구월동 B-2블록 604동 3,4호 구월동 B-2블록 605동 1호	84	
	6	구월동 B-2블록 605동 2 ~ 4호	84		6	구월동 B-2블록 605동 2 ~ 4호	84	
	7	구월동 B-2블록 606동 1 ~ 3호	60		7	구월동 B-2블록 606동 1 ~ 3호	60	
	8	구월동 B-2블록 606동 4호 구월동 B-2블록 607동	70		8	구월동 B-2블록 606동 4호 구월동 B-2블록 607동	70	

현행			조정후			비고 (조정내역)
통반	관할구역	세대수	통반	관할구역	세대수	
43	소 계	324	31	소 계	324	통명칭 변경
	1 구월동 B-3블록 801동 1 ~ 4호	74		1 구월동 B-3블록 801동 1 ~ 4호	74	
	2 구월동 B-3블록 801동 5호 구월동 B-3블록 802동 구월동 B-3블록 803동 1호	74		2 구월동 B-3블록 801동 5호 구월동 B-3블록 802동 구월동 B-3블록 803동 1호	74	
	3 구월동 B-3블록 803동 2 ~ 4호 구월동 B-3블록 804동 1호 구월동 B-3블록 804동 102호~1502호	85		3 구월동 B-3블록 803동 2 ~ 4호 구월동 B-3블록 804동 1호 구월동 B-3블록 804동 102호~1502호	85	
	4 구월동 B-3블록 804동 1602호~2902호 구월동 B-3블록 804동 3 ~ 5호	91		4 구월동 B-3블록 804동 1602호~2902호 구월동 B-3블록 804동 3 ~ 5호	91	
44	소 계	444	32	소 계	444	통명칭 변경
	1 구월동 B-3블록 805동 1 ~ 3호	84		1 구월동 B-3블록 805동 1 ~ 3호	84	
	2 구월동 B-3블록 805동 4호 구월동 B-3블록 806동 1,2호 구월동 B-3블록 806동 103호~1303호	97		2 구월동 B-3블록 805동 4호 구월동 B-3블록 806동 1,2호 구월동 B-3블록 806동 103호~1303호	97	
	3 구월동 B-3블록 806동 1403호~2803호 구월동 B-3블록 806동 4호 구월동 B-3블록 807동 1,2호	99		3 구월동 B-3블록 806동 1403호~2803호 구월동 B-3블록 806동 4호 구월동 B-3블록 807동 1,2호	99	
	4 구월동 B-3블록 807동 3,4호 구월동 B-3블록 808동 1호	79		4 구월동 B-3블록 807동 3,4호 구월동 B-3블록 808동 1호	79	
	5 구월동 B-3블록 808동 2 ~ 4호	85		5 구월동 B-3블록 808동 2 ~ 4호	85	
45	소 계	480	33	소 계	480	통명칭 변경
	1 구월동 S-1블록 101동 1 ~ 3호	80		1 구월동 S-1블록 101동 1 ~ 3호	80	
	2 구월동 S-1블록 101동 4,5호 구월동 S-1블록 102동 1호	85		2 구월동 S-1블록 101동 4,5호 구월동 S-1블록 102동 1호	85	
	3 구월동 S-1블록 102동 2 ~ 4호	87		3 구월동 S-1블록 102동 2 ~ 4호	87	
	4 구월동 S-1블록 103동 1 ~ 2호 구월동 S-1블록 103동 103호~1503호	73		4 구월동 S-1블록 103동 1 ~ 2호 구월동 S-1블록 103동 103호~1503호	73	
	5 구월동 S-1블록 103동 1603호~2903호 구월동 S-1블록 103동 4호 구월동 S-1블록 104동 1호	71		5 구월동 S-1블록 103동 1603호~2903호 구월동 S-1블록 103동 4호 구월동 S-1블록 104동 1호	71	
	6 구월동 S-1블록 104동 2 ~ 4호	84		6 구월동 S-1블록 104동 2 ~ 4호	84	
46	소 계	370	34	소 계	370	통명칭 변경
	1 구월동 S-1블록 105동 1 ~ 3호	84		1 구월동 S-1블록 105동 1 ~ 3호	84	
	2 구월동 S-1블록 105동 4호 구월동 S-1블록 106동 1호 구월동 S-1블록 106동 102호~1502호	72		2 구월동 S-1블록 105동 4호 구월동 S-1블록 106동 1호 구월동 S-1블록 106동 102호~1502호	72	
	3 구월동 S-1블록 106동 1602호~2902호 구월동 S-1블록 106동 3,4호	71		3 구월동 S-1블록 106동 1602호~2902호 구월동 S-1블록 106동 3,4호	71	
	4 구월동 S-1블록 107동 1,2호 구월동 S-1블록 107동 203호~1503호	71		4 구월동 S-1블록 107동 1,2호 구월동 S-1블록 107동 203호~1503호	71	
	5 구월동 S-1블록 107동 1603호~2903호 구월동 S-1블록 107동 4,5호	72		5 구월동 S-1블록 107동 1603호~2903호 구월동 S-1블록 107동 4,5호	72	
47	소 계	222	35	소 계	222	통명칭 변경
	1 인주대로710번길 단독1,9 선수촌공원로55번길 단독2~5	25		1 인주대로710번길 단독1,9 선수촌공원로55번길 단독2~5	25	
	2 선수촌공원로55번길 단독6~8, 단독10, 11	29		2 선수촌공원로55번길 단독6~8, 단독10, 11	29	
	3 선수촌공원로 도시형생활주택 4~6층	54		3 선수촌공원로 도시형생활주택 4~6층	54	
	4 선수촌공원로 도시형생활주택 7~9층	54		4 선수촌공원로 도시형생활주택 7~9층	54	
	5 선수촌공원로 도시형생활주택 10~12층	60		5 선수촌공원로 도시형생활주택 10~12층	60	

구월3동

현 행				조 정 후			
구 월 3 동				구 월 3 동			
통	반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통	반	도로명주소	
1	1		남동구 구월남로 77	1	1	남동구 구월남로 77	
			남동구 구월남로 81-1			남동구 구월남로 81-1	
			남동구 구월남로 81-2			남동구 구월남로 81-2	
			남동구 구월남로 81-3			남동구 구월남로 81-3	
			남동구 구월남로 81-4			남동구 구월남로 81-4	
			남동구 구월남로 81-7			남동구 구월남로 81-7	
			남동구 구월남로 81-8			남동구 구월남로 81-8	
			남동구 구월남로 81-9			남동구 구월남로 81-9	
			남동구 구월남로 81-10			남동구 구월남로 81-10	
			남동구 구월남로77번길 4			남동구 구월남로 81-10	
			남동구 구월남로77번길 8			남동구 구월남로77번길 4	
			남동구 구월남로85번길 3			남동구 구월남로77번길 8	
			남동구 구월남로85번길 3-1			남동구 구월남로85번길 3	
			남동구 구월남로85번길 7-1			남동구 구월남로85번길 3-1	
			남동구 구월남로85번길 9			남동구 구월남로85번길 7	
			남동구 구월남로85번길 11-5			남동구 구월남로85번길 7-1	
			남동구 구월남로85번길 11-11			남동구 구월남로85번길 9	
						남동구 구월남로85번길 11-5	
						남동구 구월남로85번길 11-11	
1	2		남동구 구월남로85번길 3				
			남동구 구월남로85번길 7				
			남동구 구월남로85번길 9				
1	3		남동구 구월남로77번길 16	1	2	남동구 구월남로77번길 16	
			남동구 구월남로77번길 16-1			남동구 구월남로77번길 16-1	
			남동구 구월남로77번길 20			남동구 구월남로77번길 20	
			남동구 구월남로77번길 20-1			남동구 구월남로77번길 20-1	
			남동구 구월남로77번길 20-2			남동구 구월남로77번길 20-2	
			남동구 구월남로77번길 25			남동구 구월남로77번길 25	
			남동구 구월남로85번길 11-16			남동구 구월남로85번길 11-16	
			남동구 구월남로85번길 11-20			남동구 구월남로85번길 11-20	
			남동구 구월남로85번길 11-22			남동구 구월남로85번길 11-22	
			남동구 구월남로85번길 11-26			남동구 구월남로85번길 11-26	
			남동구 문화로169번길 29-1			남동구 문화로169번길 29-1	
			남동구 문화로169번길 31			남동구 문화로169번길 31	
			남동구 문화로169번길 35			남동구 문화로169번길 35	
			남동구 문화로169번길 43			남동구 문화로169번길 43	
			남동구 문화로169번길 73			남동구 문화로169번길 73	
1	4		남동구 구월남로85번길 11-10	1	3	남동구 구월남로85번길 11-10	
			남동구 구월남로85번길 12-5			남동구 구월남로85번길 12-5	
			남동구 구월남로85번길 12-11			남동구 구월남로85번길 12-11	
			남동구 구월남로85번길 12-13			남동구 구월남로85번길 12-13	
			남동구 구월남로85번길 15			남동구 구월남로85번길 15	
			남동구 구월남로85번길 16			남동구 구월남로85번길 16	
			남동구 구월남로85번길 17			남동구 구월남로85번길 17	
			남동구 문화로169번길 19			남동구 문화로169번길 19	
			남동구 문화로169번길 25			남동구 문화로169번길 25	
1	5		남동구 문화로 161 대우재엘에이치 101동	1	4	남동구 문화로 161 대우재엘에이치 101동	
			남동구 문화로 161 대우재엘에이치 102동			남동구 문화로 161 대우재엘에이치 102동	
1	6		남동구 문화로 161 대우재엘에이치 103동	1	5	남동구 문화로 161 대우재엘에이치 103동	

○ 구월1동 편입지역 통반 신설

현 행 (구월1동)				조 정 후 (구월3동)			
통	반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통	반	도로명주소	
26	1	구월동 201-200	남동구 인주대로626번길 23	26	1	남동구 인주대로626번길 23	
		구월동 1149-1~4	남동구 남동대로 745			남동구 남동대로 745	
		구월동 1150-10,17	남동구 남동대로 743			남동구 남동대로 743	
		구월동 1150-1 금호주택	남동구 남동대로 739			남동구 남동대로 739	
		구월동 1150-8	남동구 남동대로 737-1			남동구 남동대로 737-1	
		성화그린타운5,204	남동구 성말로53번길 83			남동구 성말로53번길 83	
		구월동 1150-7	남동구 성말로53번길 81			남동구 성말로53번길 81	
		성화그린타운6,203	남동구 성말로53번길 73			남동구 성말로53번길 73	
		구월동 1150-6	남동구 성말로53번길 77			남동구 성말로53번길 77	
		성화그린타운7,202	남동구 인주대로626번길 23			남동구 인주대로626번길 23	
26	2	구월동 201-45,154	남동구 인주대로624번길 23	26	2	남동구 인주대로624번길 23	
		구월동 201-155 궁전타운	남동구 인주대로624번길 27			남동구 인주대로624번길 27	
		구월동 201-156 미래주택	남동구 인주대로626번길 28			남동구 인주대로626번길 28	
		구월동 1150-14	남동구 인주대로626번길 24			남동구 인주대로626번길 24	
		구월동 1150-13	남동구 남동대로733번길 8			남동구 남동대로733번길 8	
		무궁화빌라2동,성화그린201	남동구 남동대로733번길 12			남동구 남동대로733번길 12	
		구월동 1150-9 무궁화빌라 3동	남동구 인주대로626번길 33			남동구 인주대로626번길 33	
		구월동 1150-11 무궁화빌라 4동	남동구 인주대로626번길 25			남동구 인주대로626번길 25	
		구월동 1151-5~8	남동구 남동대로733번길 20			남동구 남동대로733번길 20	
			남동구 인주대로624번길 27			남동구 인주대로624번길 27	
26	3	구월동 201-164	남동구 인주대로626번길 28	26	3	남동구 인주대로626번길 28	
		구월동 201-46 부성원룸	남동구 인주대로620번길 23			남동구 인주대로620번길 23	
		구월동 201-157 쏠로타운 10차 A동	남동구 인주대로620번길 27			남동구 인주대로620번길 27	
		구월동 201-158 쏠로타운 10차 B동	남동구 인주대로620번길 29			남동구 인주대로620번길 29	
		구월동 201-159 예그린빌라	남동구 인주대로624번길 28			남동구 인주대로624번길 28	
		구월동 201-160 부원주택	남동구 인주대로624번길 26			남동구 인주대로624번길 26	
		구월동 201-164 명성원룸	남동구 인주대로620번길 28			남동구 인주대로620번길 28	
		구월동 201-165 로드빌	남동구 인주대로620번길 24			남동구 인주대로620번길 24	
		구월동 1151-1~3	남동구 인주대로620번길 29			남동구 인주대로620번길 29	
			남동구 남동대로733번길 24			남동구 남동대로733번길 24	
26	4	구월동	남동구 인주대로618번길 25	26	4	남동구 인주대로618번길 25	
		201-47,48,161,167~169,174~176,208	남동구 인주대로614번길 23			남동구 인주대로614번길 23	
			남동구 인주대로618번길 27			남동구 인주대로618번길 27	
			남동구 인주대로614번길 29			남동구 인주대로614번길 29	
			남동구 인주대로618번길 32			남동구 인주대로618번길 32	
			남동구 인주대로618번길 28			남동구 인주대로618번길 28	
		구월동 201-162 정든마을	남동구 인주대로614번길 32			남동구 인주대로614번길 32	
		구월동 201-166 한울타리	남동구 인주대로614번길 30			남동구 인주대로614번길 30	
		구월동 201-170 성마을	남동구 인주대로614번길 28			남동구 인주대로614번길 28	
			남동구 인주대로614번길 31			남동구 인주대로614번길 31	
			남동구 인주대로618번길 29			남동구 인주대로618번길 29	
			남동구 인주대로614번길 27			남동구 인주대로614번길 27	
			남동구 인주대로618번길 24			남동구 인주대로618번길 24	

현 행 (구월1동)				조 정 후 (구월3동)			
통	반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통	반	도로명주소	
26	5	구월동 201-177 정원빌라		26	5		
		구월동 201-173	남동구 인주대로614번길 26			남동구 인주대로614번길 26	
		구월동 201-181 쓸로타운 1차 B동	남동구 남동대로733번길 42			남동구 남동대로733번길 42	
		구월동 201-2 쓸로타운 2차 A동	남동구 남동대로733번길 48			남동구 남동대로733번길 48	
		구월동 201-3 쓸로타운 3차 B동	남동구 인주대로612번길 27			남동구 인주대로612번길 27	
		구월동 201-171 쓸로타운 2차 C동	남동구 인주대로612번길 26			남동구 인주대로612번길 26	
		구월동 201-184 쓸로타운 3차 A동	남동구 인주대로612번길 25			남동구 인주대로612번길 25	
		구월동 201-49 쓸로타운 3차 B동	남동구 인주대로612번길 29			남동구 인주대로612번길 29	
		구월동 201-172 쓸로타운 5차 B동					
26	6	구월동 201-186,187,190,191	남동구 남동대로733번길 54	26	6	남동구 남동대로733번길 54	
		구월동 201-51 스위트빌	남동구 인주대로610번길 26			남동구 인주대로610번길 26	
		구월동 201-180 쓸로타운 1차 A동	남동구 남동대로733번길 56-10			남동구 남동대로733번길 56-10	
		구월동 201-50 쓸로타운 6차 A동	남동구 남동대로733번길 56-8			남동구 남동대로733번길 56-8	
		구월동 201-178 쓸로타운 6차 B동	남동구 남동대로733번길 50			남동구 남동대로733번길 50	
		구월동 201-179 쓸로타운 6차 C동	남동구 인주대로610번길 27			남동구 인주대로610번길 27	
		구월동 201-179 쓸로타운 6차 C동	남동구 인주대로610번길 29			남동구 인주대로610번길 29	
		구월동 201-185 돌식원룸 가동	남동구 남동대로733번길 56-6			남동구 남동대로733번길 56-6	
		구월동 201-188 돌식원룸 나동	남동구 인주대로610번길 30			남동구 인주대로610번길 30	
		구월동 201-189 정식주택	남동구 인주대로610번길 28			남동구 인주대로610번길 28	
26	7		남동구 남동대로733번길 55-2	26	7	남동구 남동대로733번길 55-2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39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39	
		구월동 201-15,55,197	남동구 남동대로733번길 51			남동구 남동대로733번길 51	
		구월동 201-54 영진원룸 B동	남동구 남동대로733번길 55-1			남동구 남동대로733번길 55-1	
		구월동 201-198 영진원룸 C동	남동구 남동대로733번길 55-3			남동구 남동대로733번길 55-3	
		구월동 201-199 서원빌라 B동	남동구 남동대로733번길 55-7			남동구 남동대로733번길 55-7	
		구월동 202-1,4	남동구 인주대로620번길 29			남동구 인주대로620번길 29	
		구월동 1151-1~5,9,11~14,18	남동구 남동대로733번길 24			남동구 남동대로733번길 24	
		구월동 1152-8,17 삼성그린맨션 1동	남동구 남동대로733번길 20			남동구 남동대로733번길 20	
		구월동 1152-6,7 삼성그린맨션 2동	남동구 남동대로733번길 16			남동구 남동대로733번길 16	
		구월동 1152-16 서원빌라 A동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49-25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49-25	
		구월동 1152-10 서원빌라 B동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49-29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49-29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49-5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49-5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49-13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49-13	
26	8		남동구 남동대로733번길 56-9	26	8	남동구 남동대로733번길 56-9	
			남동구 남동대로733번길 56-7			남동구 남동대로733번길 56-7	
			남동구 남동대로733번길 56-3			남동구 남동대로733번길 56-3	
		구월동 201-52,192~196	남동구 남동대로733번길 58			남동구 남동대로733번길 58	
		구월동 201-53 영진원룸 A,C동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39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39	
		구월동 1409-1	남동구 남동대로733번길 55-6			남동구 남동대로733번길 55-6	
		구월동 1448-2,3	남동구 남동대로733번길 55-2			남동구 남동대로733번길 55-2	
		구월동 1448-1 상우차르둠	남동구 성말로13번길 78			남동구 성말로13번길 78	
		구월동 1449-1,2,3	남동구 성말로13번길 56-2			남동구 성말로13번길 56-2	
		구월동 1450-1	남동구 성말로13번길 56-1			남동구 성말로13번길 56-1	
			남동구 인하로507번길 97			남동구 인하로507번길 97	
			남동구 인하로507번길 98			남동구 인하로507번길 98	

현 행 (구월1동)				조 정 후 (구월3동)			
통	반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통	반	도로명주소	
27	1	구월동 1162-1,28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53	27	1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53	
		구월동 1162-2 수정빌라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49-4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49-4	
		구월동 1162-31 서원빌라 1,2동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61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61	
		구월동 1162-30 서원빌라 3동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61-1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61-1	
		구월동 1162-27 서원빌라 4동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57-1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57-1	
		구월동 1162-5 서원빌라 5,6동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53-1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53-1	
		구월동 1451-1~5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57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57	
		구월동 1452-1,2	남동구 인하로507번길 88			남동구 인하로507번길 88	
		구월동 1453-1,2	남동구 인하로507번길 84			남동구 인하로507번길 84	
		구월동 1454-1,2,3	남동구 인하로507번길 80			남동구 인하로507번길 80	
			남동구 인하로507번길 74			남동구 인하로507번길 74	
			남동구 성말로13번길 36-9			남동구 성말로13번길 36-9	
			남동구 성말로13번길 36-10			남동구 성말로13번길 36-10	
			남동구 성말로13번길 36-14			남동구 성말로13번길 36-14	
			남동구 예술로140번길 33			남동구 예술로140번길 33	
			남동구 예술로140번길 35			남동구 예술로140번길 35	
			남동구 예술로140번길 39			남동구 예술로140번길 39	
27	2	구월동 1162-24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49-18	27	2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49-18	
		구월동 1162-4 부광빌라 가동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49-20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49-20	
		구월동 1162-26 부광빌라 나동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49-22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49-22	
		구월동 1162-25 부광빌라 다동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49-8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49-8	
		구월동 1162-3 금성빌라 A동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49-16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49-16	
		구월동 1162-43 금성빌라 B동					
27	3	구월동 1162-8,9,15,23,40,41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49-24	27	3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49-24	
		구월동 1162-10 대승빌라 가동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49-26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49-26	
		구월동 1162-22 대승빌라 나동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49-34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49-34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49-32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49-32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49-30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49-30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49-28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49-28	
27	4	구월동 1162-19 금강빌라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49-44	27	4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49-44	
		구월동 1162-21 롯데파크 1동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89-5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89-5	
		구월동 1162-44 롯데파크 2동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89-7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89-7	
		구월동 1162-45 롯데파크 3동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49-50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49-50	
		구월동 1162-32 성주빌라 2동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49-36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49-36	
		구월동 1162-33 성주빌라 3동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49-38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49-38	
		구월동 1162-34 성주빌라 4동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49-42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49-42	
27	5	구월동 1162-11~14,17,20,38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63	27	5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63	
		구월동 1162-16 성주빌라 1동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65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65	
		구월동 1162-35 성주빌라 5동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69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69	
		구월동 1162-36 성주빌라 6동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69-1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69-1	
		구월동 1162-37 성주빌라 7동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73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73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83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83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75-5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75-5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75-6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75-6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75-4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75-4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77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77	

현 행 (구월1동)				조 정 후 (구월3동)			
통	반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통	반	도로명주소	
28	1	구월동 1161-3	남동구 성말로35번길 43	28	1	남동구 성말로35번길 43	
		구월동 1161 은성빌라, 목화빌라2동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49-94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49-94	
		구월동 1161-1 중앙화이트타운 A동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49-90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49-90	
		구월동 1161-4 중앙화이트타운 B동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49-88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49-88	
		구월동 1161-25 정운빌라 가동	남동구 성말로35번길 47			남동구 성말로35번길 47	
		구월동 1161-2 정운빌라 나동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49-96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49-96	
28	2	구월동 1161-5,6,23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49-86	28	2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49-86	
		구월동 1161-24 목화빌라 1,2동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49-82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49-82	
		구월동 1161-7 목화빌라 3동	남동구 성말로35번길 37			남동구 성말로35번길 37	
			남동구 성말로35번길 39			남동구 성말로35번길 39	
			남동구 성말로35번길 37-1			남동구 성말로35번길 37-1	
			남동구 성말로35번길 39-1			남동구 성말로35번길 39-1	
28	3	구월동 1161-10 아주정광아파트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49-74	28	3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49-74	
28	4	구월동 1161-11,12,14~18,20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49-70	28	4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49-70	
		구월동 1161-8 대승빌라 나동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49-68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49-68	
		구월동 1161-9 대승빌라 다동	남동구 남동대로711번길 42			남동구 남동대로711번길 42	
		구월동 1161-13 공원주택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49-78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49-78	
		구월동 1161-19 금강빌라	남동구 성말로35번길 35-1			남동구 성말로35번길 35-1	
		구월동 1161-21 미주빌라 가동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49-80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49-80	
			남동구 남동대로711번길 46			남동구 남동대로711번길 46	
			남동구 남동대로711번길 40			남동구 남동대로711번길 40	
28	5	구월동 1163-1,4~9,11~18,20	남동구 성말로35번길 35	28	5	남동구 성말로35번길 35	
		구월동 1163-2 총인빌라 A동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91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91	
		구월동 1163-10 총인빌라 B동	남동구 성말로 27			남동구 성말로 27	
		구월동 1163-3 서보빌라 1동	남동구 성말로 29			남동구 성말로 29	
		구월동 1163-15 서보빌라 2동	남동구 성말로 3			남동구 성말로 3	
		구월동 1456-1	남동구 성말로35번길 9			남동구 성말로35번길 9	
		구월동 1457-1	남동구 성말로35번길 5			남동구 성말로35번길 5	
		구월동 1458-1	남동구 성말로 33			남동구 성말로 33	
		구월동 1459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89-10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89-10	
		구월동 1460-1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89-14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89-14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89-16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89-16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89-8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89-8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89-10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89-10	
			남동구 성말로 1			남동구 성말로 1	
			남동구 성말로13번길 15			남동구 성말로13번길 15	
			남동구 인하로507번길 63			남동구 인하로507번길 63	
			남동구 성말로 17			남동구 성말로 17	
			남동구 인하로507번길 56			남동구 인하로507번길 56	

현 행 (구월1동)				조 정 후 (구월3동)			
통	반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통	반	도로명주소	
29	1	구월동 1153-2 정광아파트 가동 구월동 1154-2 정광아파트 가동	남동대로725번길 32 정광아파트 가동 성말로53번길 55-13 금성빌라	29	1	남동대로725번길 32 정광아파트 가동 성말로53번길 55-13 금성빌라	
29	2	구월동 1153-2 정광아파트 나동	남동구 남동대로725번길 32 정광아파트 나동	29	2	남동구 남동대로725번길 32 정광아파트 나동	
29	3	구월동 1153-6,9,10,11,12 구월동 1153-1 보라주택 구월동 1153-10 흥진빌라 구월동 1153-14 대영주택 구월동 1155-1,2,3 구월동 1170-2 대영주택	남동구 남동대로733번길 25 남동구 성말로53번길 55-8 남동구 성말로53번길 55-6 남동구 성말로53번길 55-4 남동구 성말로53번길 55-2 남동구 남동대로733번길 27 남동구 성말로53번길 55-6 남동구 남동대로733번길 23 남동구 남동대로 731 남동구 남동대로 729 남동구 남동대로 727 남동구 성말로44번길 14	29	3	남동구 남동대로733번길 25 남동구 성말로53번길 55-8 남동구 성말로53번길 55-6 남동구 성말로53번길 55-4 남동구 성말로53번길 55-2 남동구 남동대로733번길 27 남동구 성말로53번길 55-6 남동구 남동대로733번길 23 남동구 남동대로 731 남동구 남동대로 729 남동구 남동대로 727 남동구 성말로44번길 14	
29	4	구월동 1153-2 정광아파트 나동 구월동 1154-7 구월동 1154 호석드림빌라 구월동 1154-1 호석드림빌라 2차 구월동 1154-2 금성빌라 구월동 1154-3 유진빌라 구월동 1154-5 동우빌라 가동 구월동 1154-8 동우빌라 나동 구월동 1154-9 동우빌라 다동 구월동 1154-10 동우빌라 라동	남동대로725번길 32 정광아파트 나동 남동구 남동대로725번길 26-4 남동구 성말로53번길 55-19 남동구 성말로53번길 55-15 남동구 성말로53번길 55-13 남동구 성말로53번길 55-9 남동구 남동대로725번길 22 남동구 남동대로725번길 20 남동구 남동대로725번길 18 남동구 남동대로725번길 16	29	4	남동대로725번길 32 정광아파트 나동 남동구 남동대로725번길 26-4 남동구 성말로53번길 55-19 남동구 성말로53번길 55-15 남동구 성말로53번길 55-13 남동구 성말로53번길 55-9 남동구 남동대로725번길 22 남동구 남동대로725번길 20 남동구 남동대로725번길 18 남동구 남동대로725번길 16	
29	5	구월동 1156-4 구월동 1157-1~4, 6~11 구월동 1157-5 동신센스빌	남동구 남동대로 715 남동구 남동대로725번길 17 남동구 남동대로725번길 13 남동구 남동대로725번길 5 남동구 성말로53번길 39 남동구 성말로53번길 35-10 남동구 성말로53번길 35-12 남동구 성말로53번길 35-14 남동구 성말로53번길 35-18 남동구 성말로53번길 35-20 남동구 남동대로725번길 11 남동구 성말로53번길 35-4	29	5	남동구 남동대로 715 남동구 남동대로725번길 17 남동구 남동대로725번길 13 남동구 남동대로725번길 5 남동구 성말로53번길 39 남동구 성말로53번길 35-10 남동구 성말로53번길 35-12 남동구 성말로53번길 35-14 남동구 성말로53번길 35-18 남동구 성말로53번길 35-20 남동구 남동대로725번길 11 남동구 성말로53번길 35-4	

현 행 (구월1동)				조 정 후 (구월3동)			
통	반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통	반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30	1	구월동 1156-1,6	남동구 남동대로 721-1	30	1	남동구 남동대로 721-1	
		구월동 1158-3	남동구 남동대로711번길 4			남동구 남동대로711번길 4	
		구월동 1158-1 대원씨티빌 1동	남동구 성말로53번길 35-3			남동구 성말로53번길 35-3	
		구월동 1158-15 대원씨티빌 2동	남동구 성말로53번길 35-11			남동구 성말로53번길 35-11	
		구월동 1158-2 대한주택 가동	남동구 성말로53번길 35-9			남동구 성말로53번길 35-9	
		구월동 1158-8 대한주택 나동	남동구 성말로53번길 35-5			남동구 성말로53번길 35-5	
		구월동 1158-5 청양빌라	남동구 성말로53번길 27-10			남동구 성말로53번길 27-10	
		구월동 1158-6 삼정빌라	남동구 성말로53번길 27-12			남동구 성말로53번길 27-12	
		구월동 1158-7 윤흥빌라	남동구 성말로53번길 27-14			남동구 성말로53번길 27-14	
		구월동 1159-12 행복하우스 나동	남동구 남동대로711번길 22			남동구 남동대로711번길 22	
30	2	구월동 1158-12 우주빌라 1동	남동구 남동대로711번길 26-12	30	2	남동구 남동대로711번길 26-12	
		구월동 1158-13 우주빌라 2동	남동구 남동대로711번길 26-14			남동구 남동대로711번길 26-14	
		구월동 1158 우주빌라 3동	남동구 성말로53번길 35-19			남동구 성말로53번길 35-19	
		구월동 1158-11 우주빌라 4동	남동구 성말로53번길 27-16			남동구 성말로53번길 27-16	
		구월동 1158-10 우주빌라 5동	남동구 남동대로711번길 26-16			남동구 남동대로711번길 26-16	
		구월동 1158-9 우주빌라 6동	남동구 성말로53번길 35-17			남동구 성말로53번길 35-17	
30	3	구월동 1160 송정아파트 가동	남동대로725번길 31 송정아파트 가동	30	3	남동대로725번길 31 송정아파트 가동	
		구월동 1169 송정아파트 가동					
30	4	구월동 1160 송정아파트 나동	남동대로725번길 31 송정아파트 나동	30	4	남동대로725번길 31 송정아파트 나동	
30	5	구월동 1160-2,4,7,9	남동구 남동대로711번길 26-11	30	5	남동구 남동대로711번길 26-11	
		구월동 1160-3 덕진빌라 A~D동	남동구 성말로35번길 28			남동구 성말로35번길 28	
		구월동 1160-4 신진주택	남동구 남동대로711번길 30			남동구 남동대로711번길 30	
		구월동 1160-5 청구빌라	남동구 성말로35번길 26			남동구 성말로35번길 26	
		구월동 1160-8 신진빌라	남동구 남동대로711번길 26-9			남동구 남동대로711번길 26-9	
		구월동 1160-9 신진주택	남동구 남동대로711번길 26-5			남동구 남동대로711번길 26-5	
		구월동 1160-11 덕진빌라 A,B동	남동구 성말로35번길 28			남동구 성말로35번길 28	
			남동구 성말로35번길 24			남동구 성말로35번길 24	
31	1		남동구 성말로35번길 26-1	31	1	남동구 성말로35번길 26-1	
		구월동 1159-2,4,6,7	남동구 남동대로711번길 20			남동구 남동대로711번길 20	
		구월동 1159-1 행복하우스 가동	남동구 성말로53번길 27-11			남동구 성말로53번길 27-11	
		구월동 1159-3 현대원룸	남동구 성말로53번길 27-17			남동구 성말로53번길 27-17	
		구월동 1159-10 신세대주택 A동	남동구 성말로53번길 27-13			남동구 성말로53번길 27-13	
		구월동 1159-9 신세대주택 B동	남동구 남동대로711번길 24			남동구 남동대로711번길 24	
		구월동 1159-5 신세대주택 C동	남동구 남동대로711번길 16			남동구 남동대로711번길 16	
		구월동 1159-8 삼성빌라	남동구 성말로53번길 27-1			남동구 성말로53번길 27-1	
		구월동 1159-11 삼성빌라	남동구 성말로53번길 27-5			남동구 성말로53번길 27-5	
			남동구 성말로53번길 27-7			남동구 성말로53번길 27-7	
			남동구 남동대로711번길 12			남동구 남동대로711번길 12	
			남동구 남동대로711번길 8			남동구 남동대로711번길 8	
31	2		남동구 남동대로711번길 29	31	2	남동구 남동대로711번길 29	
			남동구 남동대로711번길 25-4			남동구 남동대로711번길 25-4	
		구월동 1164-1,3,4,5,6,8,9	남동구 남동대로711번길 25-6			남동구 남동대로711번길 25-6	
		구월동 1164 부림빌라 가동	남동구 남동대로711번길 25-8			남동구 남동대로711번길 25-8	
		구월동 1164-25 부림빌라 나동, 예수빌라	남동구 성말로35번길 10			남동구 성말로35번길 10	
			남동구 성말로 39			남동구 성말로 39	
		구월동 1164-23 부림빌라 다동	남동구 성말로 41			남동구 성말로 41	
		구월동 1164-24 부림빌라 라동	남동구 성말로35번길 16			남동구 성말로35번길 16	
		구월동 1164-22 예수빌라	남동구 성말로35번길 12			남동구 성말로35번길 12	
			남동구 남동대로711번길 31			남동구 남동대로711번길 31	
			남동구 성말로35번길 12-1			남동구 성말로35번길 12-1	
			남동구 성말로 41-1			남동구 성말로 41-1	

현 행 (구월1동)				조 정 후 (구월3동)			
통	반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통	반	도로명주소	
31	3	구월동 1164-12 금호빌라 A동 구월동 1164-27 금호빌라 B동	남동구 성말로53번길 9-19 남동구 성말로53번길 9-15	31	3	남동구 성말로53번길 9-19 남동구 성말로53번길 9-15	
31	4	구월동 1164-17,19 구월동 1164-18 남부빌라 가동 구월동 1164-28 남부빌라 나동	남동구 성말로53번길 9-11 남동구 성말로53번길 9-5 남동구 성말로53번길 9-9 남동구 성말로53번길 9-7	31	4	남동구 성말로53번길 9-11 남동구 성말로53번길 9-5 남동구 성말로53번길 9-9 남동구 성말로53번길 9-7	
31	5	구월동 1165-2,8,9,13,14,15 구월동 1165-3 현대빌라 구월동 1165-6 신세계하이빌 구월동 1165-7 세진주택 구월동 1165-15 호암원룸 구월동 1165-17 신세기네오빌 구월동 1166-3	남동구 남동대로711번길 21 남동구 성말로53번길 9-8 남동구 성말로53번길 9-10 남동구 성말로53번길 9-16 남동구 성말로53번길 9-14 남동구 남동대로711번길 17 남동구 남동대로711번길 19 남동구 성말로53번길 11 남동구 성말로53번길 9-6 남동구 남동대로711번길 11 남동구 남동대로 707	31	5	남동구 남동대로711번길 21 남동구 성말로53번길 9-8 남동구 성말로53번길 9-10 남동구 성말로53번길 9-16 남동구 성말로53번길 9-14 남동구 남동대로711번길 17 남동구 남동대로711번길 19 남동구 성말로53번길 11 남동구 성말로53번길 9-6 남동구 남동대로711번길 11 남동구 남동대로 707	
32	1	구월동 1171-1~5,7~9,11~13,31 구월동 1171 수정주택 구월동 1171-6 부림빌라 구월동 1171-10 롯데맨손	남동구 성말로32번길 11-4 남동구 성말로32번길 19 남동구 성말로32번길 11-6 남동구 성말로32번길 11-12 남동구 인하로521번길 29 남동구 인하로521번길 27 남동구 인하로521번길 25	32	1	남동구 성말로32번길 11-4 남동구 성말로32번길 19 남동구 성말로32번길 11-6 남동구 성말로32번길 11-12 남동구 인하로521번길 29 남동구 인하로521번길 27 남동구 인하로521번길 25	
32	2	구월동 1171-15,17~28,30 구월동 1171-16 수정빌라 A동 구월동 1171-29 수정빌라 B동	남동구 성말로32번길 21-4 남동구 인하로521번길 21 남동구 인하로521번길 19 남동구 인하로521번길 15 남동구 인하로521번길 15-1 남동구 성말로32번길 29-1 남동구 성말로32번길 29 남동구 성말로32번길 31 남동구 성말로32번길 33 남동구 인하로511번길 10-15 남동구 인하로511번길 10-17 남동구 인하로511번길 10-19 남동구 성말로32번길 25 남동구 성말로32번길 21-6 남동구 성말로32번길 21-8	32	2	남동구 성말로32번길 21-4 남동구 인하로521번길 21 남동구 인하로521번길 19 남동구 인하로521번길 15 남동구 인하로521번길 15-1 남동구 성말로32번길 29-1 남동구 성말로32번길 29 남동구 성말로32번길 31 남동구 성말로32번길 33 남동구 인하로511번길 10-15 남동구 인하로511번길 10-17 남동구 인하로511번길 10-19 남동구 성말로32번길 25 남동구 성말로32번길 21-6 남동구 성말로32번길 21-8	
32	3	구월동 1172-13 구월동 1172-1 나랑빌라 구월동 1172-12 한성빌라 A동 구월동 1172-17 한성빌라 B동 구월동 1172-18 한성빌라 C동 구월동 1172-14 E-행복한세상 구월동 1172-19 E-편안한세상	남동구 성말로32번길 11-5 남동구 성말로32번길 3 남동구 성말로32번길 11-7 남동구 성말로32번길 11-9 남동구 성말로32번길 11-11 남동구 성말로32번길 11-1 남동구 성말로32번길 5	32	3	남동구 성말로32번길 11-5 남동구 성말로32번길 3 남동구 성말로32번길 11-7 남동구 성말로32번길 11-9 남동구 성말로32번길 11-11 남동구 성말로32번길 11-1 남동구 성말로32번길 5	

현 행 (구월1동)				조 정 후 (구월3동)			
통	반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통	반	도로명주소	
32	4	구월동 1172-2~7,9,15,16 구월동 1172-8 보성주택 구월동 1172-10 청양빌라 A동 구월동 1172-11 청양빌라B동	남동구 성말로 36-1 남동구 성말로 36 남동구 성말로 38 남동구 성말로 42 남동구 성말로44번길 4 남동구 성말로32번길 11-19 남동구 성말로 38-1 남동구 성말로44번길 8 남동구 성말로32번길 11-17 남동구 성말로32번길 11-15	32	4	남동구 성말로 36-1 남동구 성말로 36 남동구 성말로 38 남동구 성말로 42 남동구 성말로44번길 4 남동구 성말로32번길 11-19 남동구 성말로 38-1 남동구 성말로44번길 8 남동구 성말로32번길 11-17 남동구 성말로32번길 11-15	
32	5	구월동 1173-1~7,9~11,23~26,29 구월동 1173-28 청원빌라 가동 구월동 1173-30 청원빌라 나동 구월동 1173-12 청원빌라 다동	남동구 성말로 30 남동구 성말로32번길 6-1 남동구 성말로32번길 10 남동구 인하로511번길 40 남동구 인하로511번길 34 남동구 인하로511번길 32 남동구 인하로511번길 30 남동구 성말로32번길 14 남동구 성말로32번길 16 남동구 인하로511번길 22 남동구 인하로511번길 28 남동구 성말로32번길 6 남동구 성말로32번길 18 남동구 성말로32번길 20 남동구 성말로32번길 20-1	32	5	남동구 성말로 30 남동구 성말로32번길 6-1 남동구 성말로32번길 10 남동구 인하로511번길 40 남동구 인하로511번길 34 남동구 인하로511번길 32 남동구 인하로511번길 30 남동구 성말로32번길 14 남동구 성말로32번길 16 남동구 인하로511번길 22 남동구 인하로511번길 28 남동구 성말로32번길 6 남동구 성말로32번길 18 남동구 성말로32번길 20 남동구 성말로32번길 20-1	
32	6	구월동 1173-16~22 구월동 1173-13 우주빌라 7 구월동 1173-27 우주빌라 8 구월동 1173-14 나산빌리지 구월동 1173-15 성지원룸 구월동 1174-1~14	남동구 성말로32번길 30 남동구 성말로32번길 30-1 남동구 인하로511번길 10-7 남동구 인하로511번길 10-5 남동구 인하로511번길 10-3 남동구 인하로511번길 14 남동구 인하로511번길 18 남동구 성말로32번길 22-1 남동구 성말로32번길 22 남동구 성말로32번길 26 남동구 성말로32번길 28 남동구 인하로511번길 6 남동구 인하로511번길 10-8 남동구 인하로511번길 10-12 남동구 인하로511번길 10-14 남동구 인하로 517 남동구 인하로 513-1 남동구 인하로 513 남동구 인하로511번길 4 남동구 인하로 511 남동구 인하로 515 남동구 인하로511번길 10-16	32	6	남동구 성말로32번길 30 남동구 성말로32번길 30-1 남동구 인하로511번길 10-7 남동구 인하로511번길 10-5 남동구 인하로511번길 10-3 남동구 인하로511번길 14 남동구 인하로511번길 18 남동구 성말로32번길 22-1 남동구 성말로32번길 22 남동구 성말로32번길 26 남동구 성말로32번길 28 남동구 인하로511번길 6 남동구 인하로511번길 10-8 남동구 인하로511번길 10-12 남동구 인하로511번길 10-14 남동구 인하로 517 남동구 인하로 513-1 남동구 인하로 513 남동구 인하로511번길 4 남동구 인하로 511 남동구 인하로 515 남동구 인하로511번길 10-16	

현 행 (구월1동)				조 정 후 (구월3동)			
통	반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통	반	도로명주소	
32	7	구월동 1409-24,31	남동구 인하로507번길 38	32	7	남동구 인하로507번길 38	
		구월동 1461-1,2	남동구 인하로507번길 34			남동구 인하로507번길 34	
		구월동 1462-1	남동구 성말로 12			남동구 성말로 12	
		구월동 1462-2 노빌리안 1차	남동구 인하로489번길 28			남동구 인하로489번길 28	
		구월동 1463-1,2	남동구 예술로 126			남동구 예술로 126	
		구월동 1464	남동구 인하로 485			남동구 인하로 485	
		구월동 1465-1,2	남동구 인하로 497-23			남동구 인하로 497-23	
		구월동 1466-1	남동구 인하로 497-15			남동구 인하로 497-15	
		구월동 1467-1	남동구 인하로 497-9			남동구 인하로 497-9	
		구월동 1468-1,2	남동구 인하로 497-5			남동구 인하로 497-5	
		구월동 1469-1,2	남동구 인하로 501			남동구 인하로 501	
		구월동 1470-1,2	남동구 인하로507번길 1			남동구 인하로507번길 1	
		구월동 1471-1	남동구 인하로507번길 9			남동구 인하로507번길 9	
		구월동 1472-1,2	남동구 인하로507번길 21-1			남동구 인하로507번길 21-1	
		구월동 1473-2	남동구 인하로507번길 21			남동구 인하로507번길 21	
		구월동 1473-1 뉴욕프라자	남동구 인하로507번길 23			남동구 인하로507번길 23	
		구월동 1474-1~3	남동구 인하로507번길 23-1			남동구 인하로507번길 23-1	
		구월동 1475	남동구 인하로507번길 22			남동구 인하로507번길 22	
			남동구 인하로507번길 18			남동구 인하로507번길 18	
			남동구 인하로507번길 14			남동구 인하로507번길 14	
			남동구 인하로507번길 4			남동구 인하로507번길 4	
24	1	구월동 819-3	남동구 남동대로 629	33	1	남동구 남동대로 629	
		구월동 824	남동구 남동대로 671			남동구 남동대로 671	
33	1	구월동 1446 농산물도매시장				남동구 성말로44번길 20	
			남동구 성말로44번길 20			남동구 성말로44번길 24	
			남동구 성말로44번길 24			남동구 성말로44번길 24-1	
			남동구 성말로44번길 24-1			남동구 성말로44번길 26	
			남동구 성말로44번길 26			남동구 성말로44번길 30	
			남동구 성말로44번길 30			남동구 성말로44번길 32	
			남동구 성말로44번길 32			남동구 인하로521번길 10-5	
		구월동 1170-3,5,6,8~11,15,16	남동구 인하로521번길 10-5			남동구 인하로521번길 16-1	
		구월동 1175-1,2,9,10,13,17	남동구 인하로521번길 16-1			남동구 인하로521번길 20-1	
		구월동 1175-3 대원빌라	남동구 인하로521번길 20-1			남동구 인하로521번길 10-4	
			남동구 인하로521번길 10-4			남동구 인하로521번길 10-8	
			남동구 인하로521번길 10-8			남동구 인하로535번길 5	
			남동구 인하로535번길 5			남동구 인하로 535	
			남동구 인하로 535			남동구 인하로 533	
			남동구 인하로 533			남동구 인하로 529	
			남동구 인하로 529			남동구 인하로 525-1	
			남동구 인하로 525-1			남동구 인하로521번길 10-12	
			남동구 인하로521번길 10-12				

현 행 (구월1동)				조 정 후 (구월3동)			
통	반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통	반	도로명주소	
33	2	구월동 1170-1~3,5,19~21 구월동 1170-2 대영주택 구월동 1170-4 장미빌라 구월동 1170-18 민우비취타운 구월동 1175-15	남동구 성말로32번길 11-20 남동구 성말로44번길 14 남동구 성말로44번길 20 남동구 성말로44번길 24 남동구 인하로521번길 26 남동구 인하로521번길 28 남동구 인하로521번길 30 남동구 성말로44번길 14 남동구 성말로44번길 20-1 남동구 인하로521번길 22 남동구 인하로 527	33	2	남동구 성말로32번길 11-20 남동구 성말로44번길 14 남동구 성말로44번길 20 남동구 성말로44번길 24 남동구 인하로521번길 26 남동구 인하로521번길 28 남동구 인하로521번길 30 남동구 성말로44번길 14 남동구 성말로44번길 20-1 남동구 인하로521번길 22 남동구 인하로 527	
33	3	구월동 1176-5,9,10,13~18 구월동 1176-1 성모주택 구월동 1176-2 근애빌라 구월동 1176-4 성동빌라 구월동 1176-8 미성상가	남동구 남동대로691번길 13-1 남동구 인하로535번길 13 남동구 인하로521번길 10-25 남동구 인하로521번길 10-17 남동구 인하로521번길 10-15 남동구 인하로521번길 10-13 남동구 성말로44번길 29 남동구 성말로44번길 27 남동구 인하로535번길 13-1 남동구 남동대로691번길 15 남동구 남동대로691번길 15-1 남동구 남동대로691번길 13-2 남동구 인하로535번길 17	33	3	남동구 남동대로691번길 13-1 남동구 인하로535번길 13 남동구 인하로521번길 10-25 남동구 인하로521번길 10-17 남동구 인하로521번길 10-15 남동구 인하로521번길 10-13 남동구 성말로44번길 29 남동구 성말로44번길 27 남동구 인하로535번길 13-1 남동구 남동대로691번길 15 남동구 남동대로691번길 15-1 남동구 남동대로691번길 13-2 남동구 인하로535번길 17	
33	4	구월동 1167-3~5 구월동 1169-2,4,6 구월동 1169-1 금성빌라 A,B동	남동구 남동대로 699 남동구 남동대로 697-1 남동구 남동대로 697 남동구 인하로535번길 32 남동구 남동대로 691	33	4	남동구 남동대로 699 남동구 남동대로 697-1 남동구 남동대로 697 남동구 인하로535번길 32 남동구 남동대로 691	
33	5	구월동 1168-6 구월동 1168-1 유진주택 구월동 1168-2 성화빌라 302동 구월동 1168-9 성화빌라 303동 구월동 1168-10 성화빌라 304동 구월동 1170-4	남동구 성말로44번길 7 남동구 성말로 48 남동구 성말로 48-1 남동구 성말로44번길 11-7 남동구 성말로44번길 11-5 남동구 인하로535번길 39	33	5	남동구 성말로44번길 7 남동구 성말로 48 남동구 성말로 48-1 남동구 성말로44번길 11-7 남동구 성말로44번길 11-5 남동구 인하로535번길 39	
34	1	구월동 201-115,118 구월동 201-114 솔로타운 12차 A동 구월동 201-38 솔로타운 12차 B동 구월동 201-112 홀하우스 구월동 201-113 수정주택, 정상주택 구월동 201-116 아이오빌 구월동 201-117 다와주택	남동구 인주대로624번길 22 남동구 인주대로624번길 14 남동구 인주대로620번길 19 남동구 인주대로620번길 13 남동구 인주대로620번길 15 남동구 인주대로620번길 17 남동구 인주대로624번길 18 남동구 인주대로624번길 16	34	1	남동구 인주대로624번길 22 남동구 인주대로624번길 14 남동구 인주대로620번길 19 남동구 인주대로620번길 13 남동구 인주대로620번길 15 남동구 인주대로620번길 17 남동구 인주대로624번길 18 남동구 인주대로624번길 16	

현 행 (구월1동)				조 정 후 (구월3동)			
통	반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통	반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34	2	구월동 201-121~123,125	남동구 인주대로618번길 21	34	2	남동구 인주대로618번길 21	남동구 인주대로618번길 21
		구월동 201-39 양성원룸	남동구 인주대로620번길 22			남동구 인주대로620번길 22	남동구 인주대로620번길 22
		구월동 201-119 부원주택 A동	남동구 인주대로620번길 18			남동구 인주대로620번길 18	남동구 인주대로620번길 18
		구월동 201-124 부원주택 B동	남동구 인주대로620번길 14			남동구 인주대로620번길 14	남동구 인주대로620번길 14
		구월동 201-120 솔로타운 9차 A동	남동구 남동대로747번길 29			남동구 남동대로747번길 29	남동구 남동대로747번길 29
		구월동 201-123 솔로타운 9차 B동	남동구 인주대로618번길 15			남동구 인주대로618번길 15	남동구 인주대로618번길 15
			남동구 인주대로620번길 16			남동구 인주대로620번길 16	남동구 인주대로620번길 16
34	3	구월동 201-40,126~128	남동구 인주대로618번길 17	34	3	남동구 인주대로618번길 17	남동구 인주대로618번길 17
		구월동 201-132 솔로타운 7차 A동	남동구 인주대로620번길 18			남동구 인주대로620번길 18	남동구 인주대로620번길 18
		구월동 201-129 솔로타운 8차 A동	남동구 인주대로618번길 16			남동구 인주대로618번길 16	남동구 인주대로618번길 16
		구월동 201-130 솔로타운 8차 B동	남동구 남동대로747번길 35			남동구 남동대로747번길 35	남동구 남동대로747번길 35
		구월동 201-131 원타운	남동구 인주대로618번길 22			남동구 인주대로618번길 22	남동구 인주대로618번길 22
			남동구 인주대로618번길 18			남동구 인주대로618번길 18	남동구 인주대로618번길 18
			남동구 인주대로618번길 16			남동구 인주대로618번길 16	남동구 인주대로618번길 16
34	4	구월동 201-41,45,46,49	남동구 인주대로612번길 13	34	4	남동구 인주대로612번길 13	남동구 인주대로612번길 13
		구월동 201-133 솔로타운 7차 B동	남동구 인주대로624번길 23			남동구 인주대로624번길 23	남동구 인주대로624번길 23
		구월동 201-134 화이트빌라	남동구 인주대로620번길 23			남동구 인주대로620번길 23	남동구 인주대로620번길 23
		구월동 201-137 베스트빌	남동구 인주대로612번길 25			남동구 인주대로612번길 25	남동구 인주대로612번길 25
		구월동 201-138 행운타운	남동구 인주대로612번길 15			남동구 인주대로612번길 15	남동구 인주대로612번길 15
			남동구 인주대로612번길 17			남동구 인주대로612번길 17	남동구 인주대로612번길 17
			남동구 인주대로614번길 18			남동구 인주대로614번길 18	남동구 인주대로614번길 18
34	5	구월동 201-42,146	남동구 인주대로614번길 16	34	5	남동구 인주대로614번길 16	남동구 인주대로614번길 16
		구월동 201-140 그랜드빌	남동구 인주대로610번길 13			남동구 인주대로610번길 13	남동구 인주대로610번길 13
		구월동 201-141 명진주택	남동구 남동대로747번길 47			남동구 남동대로747번길 47	남동구 남동대로747번길 47
		구월동 201-142 롯데빌	남동구 인주대로610번길 15			남동구 인주대로610번길 15	남동구 인주대로610번길 15
		구월동 201-143 하트빌	남동구 인주대로610번길 17			남동구 인주대로610번길 17	남동구 인주대로610번길 17
		구월동 201-144 개미촌	남동구 인주대로610번길 19			남동구 인주대로610번길 19	남동구 인주대로610번길 19
		구월동 201-145 영타운	남동구 인주대로612번길 20			남동구 인주대로612번길 20	남동구 인주대로612번길 20
			남동구 인주대로612번길 18			남동구 인주대로612번길 18	남동구 인주대로612번길 18
			남동구 인주대로612번길 16			남동구 인주대로612번길 16	남동구 인주대로612번길 16

현 행 (구월1동)				조 정 후 (구월3동)			
통	반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통	반	도로명주소	
34	6	구월동 201-43,147,149~151,153 구월동 201-148 비발디타운 구월동 201-152 한성주택 구월동 200-1,16,17 구월동 1147-2 구월동 1147-8 진영빌라 1동 구월동 1147-9 진영빌라 2동	남동구 남동대로733번길 56-22	34	6	남동구 남동대로733번길 56-22	
			남동구 남동대로733번길 56-20			남동구 남동대로733번길 56-20	
			남동구 남동대로733번길 56-12			남동구 남동대로733번길 56-12	
			남동구 인주대로610번길 22			남동구 인주대로610번길 22	
			남동구 인주대로610번길 18			남동구 인주대로610번길 18	
			남동구 남동대로747번길 51			남동구 남동대로747번길 51	
			남동구 남동대로733번길 56-16			남동구 남동대로733번길 56-16	
			남동구 인주대로610번길 16			남동구 인주대로610번길 16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15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15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17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17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19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19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15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15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17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17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19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19	
35	1	구월동 1133 구월동 1136 구월동 1137 구월동 1138 구월동 1138 구월동 1140	남동구 예술로226번길 28	35	1	남동구 예술로226번길 28	
			남동구 정각로 14			남동구 정각로 14	
			남동구 정각로 9			남동구 정각로 9	
			남동구 정각로 29-1			남동구 정각로 29-1	
			남동구 정각로 29			남동구 정각로 29	
			남동구 미래로 42			남동구 미래로 42	
35	2	구월동 1135	남동구 정각로 2	35	2	남동구 정각로 2	
35	3	구월동 1134	남동구 예술로226번길 4	35	3	남동구 예술로226번길 4	
35	4	구월동 1131 구월동 1132	남동구 구월남로 112	35	4	남동구 구월남로 112	
			남동구 인주대로591번길 64			남동구 인주대로591번길 64	
36	1	구월동 1141 구월동 1144	남동구 구월남로 156	36	1	남동구 구월남로 156	
			남동구 인주대로623번길 40			남동구 인주대로623번길 40	
36	2	구월동 1145 구월동 1146	남동구 남동대로765번길 11	36	2	남동구 남동대로765번길 11	
			남동구 남동대로765번길 39			남동구 남동대로765번길 39	
36	3	구월동 1142 구월동 1143	남동구 미래로 32	36	3	남동구 미래로 32	
			남동구 미래로 2			남동구 미래로 2	
36	4	구월동 1127 구월동 1128 구월동 1130 구월동 1129-1~16 구월동 1129-19~22	남동구 인주대로 585	36	4	남동구 인주대로 585	
			남동구 인주대로591번길 18			남동구 인주대로591번길 18	
			남동구 예술로 198			남동구 예술로 198	
			남동구 인주대로591번길 38			남동구 인주대로591번길 38	
			남동구 인주대로591번길 32			남동구 인주대로591번길 32	
			남동구 예술로192번길 25			남동구 예술로192번길 25	
			남동구 예술로192번길 31			남동구 예술로192번길 31	
			남동구 예술로192번길 39			남동구 예술로192번길 39	
			남동구 예술로204번길 32			남동구 예술로204번길 32	
			남동구 예술로204번길 40			남동구 예술로204번길 40	
			남동구 미래로 17			남동구 미래로 17	
			남동구 미래로 13			남동구 미래로 13	
36	5	구월동 1129-17,18	남동구 미래로 21	36	5	남동구 미래로 21	

현 행 (구월1동)				조 정 후 (구월3동)			
통	반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통	반	도로명주소	
25	1	구월동 201-32,35,90~104 구월동 201-34 중앙아파트 구월동 201-36 소망화이트빌 구월동 201-92 명성빌라 구월동 201-98 컨스빌 구월동 1148-1~9	남동구 인주대로 624	37	1	남동구 인주대로 624	
			남동구 인주대로620번길 5			남동구 인주대로620번길 5	
			남동구 인주대로620번길 9			남동구 인주대로620번길 9	
			남동구 인주대로624번길 10			남동구 인주대로624번길 10	
			남동구 인주대로624번길 8			남동구 인주대로624번길 8	
			남동구 인주대로624번길 4			남동구 인주대로624번길 4	
			남동구 인주대로624번길 9			남동구 인주대로624번길 9	
			남동구 인주대로626번길 10			남동구 인주대로626번길 10	
			남동구 인주대로626번길 8			남동구 인주대로626번길 8	
			남동구 인주대로626번길 6			남동구 인주대로626번길 6	
			남동구 남동대로747번길 11			남동구 남동대로747번길 11	
			남동구 남동대로747번길 9-4			남동구 남동대로747번길 9-4	
			남동구 인주대로626번길 17			남동구 인주대로626번길 17	
			남동구 남동대로747번길 9-10			남동구 남동대로747번길 9-10	
			남동구 인주대로626번길 7			남동구 인주대로626번길 7	
			남동구 인주대로626번길 15			남동구 인주대로626번길 15	
			남동구 인주대로624번길 10			남동구 인주대로624번길 10	
			남동구 인주대로626번길 8			남동구 인주대로626번길 8	
			남동구 인주대로626번길 6			남동구 인주대로626번길 6	
			남동구 인주대로 628			남동구 인주대로 628	
			남동구 인주대로 630			남동구 인주대로 630	
			남동구 인주대로 632			남동구 인주대로 632	
			남동구 남동대로 747			남동구 남동대로 747	
25	2	구월동 201-37,108,109,111 구월동 201-105 보문주택A 구월동 201-106 보문주택B 구월동 201-107 부성원룸 구월동 201-108 제일주택 구월동 201-110 컨스빌	남동구 인주대로624번길 13	37	2	남동구 인주대로624번길 13	
			남동구 인주대로626번길 20			남동구 인주대로626번길 20	
			남동구 인주대로626번길 18			남동구 인주대로626번길 18	
			남동구 남동대로747번길 17			남동구 남동대로747번길 17	
			남동구 인주대로624번길 15			남동구 인주대로624번길 15	
			남동구 인주대로624번길 17			남동구 인주대로624번길 17	
			남동구 인주대로624번길 19			남동구 인주대로624번길 19	
			남동구 인주대로626번길 20			남동구 인주대로626번길 20	
			남동구 인주대로626번길 16			남동구 인주대로626번길 16	
25	3	구월동 201-30,31,77,79~88 구월동 201-76 한신타운 구월동 201-77 부름솔로타운 구월동 201-78 영진타운 구월동 201-87 세원주택	남동구 인주대로614번길 1	37	3	남동구 인주대로614번길 1	
			남동구 인주대로618번길 3			남동구 인주대로618번길 3	
			남동구 인주대로614번길 3			남동구 인주대로614번길 3	
			남동구 인주대로614번길 5			남동구 인주대로614번길 5	
			남동구 인주대로614번길 9			남동구 인주대로614번길 9	
			남동구 남동대로747번길 34			남동구 남동대로747번길 34	
			남동구 인주대로618번길 8			남동구 인주대로618번길 8	
			남동구 인주대로618번길 4			남동구 인주대로618번길 4	
			남동구 인주대로618번길 2			남동구 인주대로618번길 2	
			남동구 인주대로618번길 3			남동구 인주대로618번길 3	
			남동구 인주대로618번길 5			남동구 인주대로618번길 5	
			남동구 인주대로620번길 6			남동구 인주대로620번길 6	
			남동구 인주대로618번길 3			남동구 인주대로618번길 3	

현 행 (구월1동)				조 정 후 (구월3동)		
통	반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통	반	도로명주소
25	4	구월동 201-69,71,72,74,75	남동구 인주대로612번길 3	37	4	남동구 인주대로612번길 3
		구월동 201-29 금화오피스텔	남동구 인주대로612번길 9			남동구 인주대로612번길 9
		구월동 201-69 설악원룸	남동구 남동대로747번길 40			남동구 남동대로747번길 40
		구월동 201-70 골든빌	남동구 인주대로614번길 4			남동구 인주대로614번길 4
		구월동 201-71 그린빌	남동구 인주대로614번길 2			남동구 인주대로614번길 2
		구월동 201-73 쌍용투	남동구 인주대로612번길 3			남동구 인주대로612번길 3
		구월동 201-74 대만원룸	남동구 인주대로612번길 7			남동구 인주대로612번길 7
			남동구 인주대로612번길 9			남동구 인주대로612번길 9
25	5	구월동 201-28,59,60,62,65~68	남동구 인주대로614번길 8	37	5	남동구 인주대로614번길 8
		구월동 201-61 호석드림빌라	남동구 인주대로614번길 4			남동구 인주대로614번길 4
		구월동 201-63 컨스빌 A동	남동구 인주대로612번길 2			남동구 인주대로612번길 2
		구월동 201-64 컨스빌 B동	남동구 인주대로610번길 4			남동구 인주대로610번길 4
			남동구 인주대로610번길 7			남동구 인주대로610번길 7
			남동구 인주대로610번길 9			남동구 인주대로610번길 9
25	6	구월동 201-26,27,58	남동구 인주대로610번길 1	37	6	남동구 인주대로610번길 1
		구월동 1124-3,5,7,8	남동구 남동대로747번길 52			남동구 남동대로747번길 52
		구월동 1125-1~8	남동구 인주대로610번길 3			남동구 인주대로610번길 3
		구월동 1125 세연아파트	남동구 인주대로612번길 8			남동구 인주대로612번길 8
		구월동 1126-1~10	남동구 인주대로612번길 6			남동구 인주대로612번길 6
			남동구 인주대로612번길 4			남동구 인주대로612번길 4
			남동구 인주대로612번길 2			남동구 인주대로612번길 2
			남동구 인주대로610번길 4			남동구 인주대로610번길 4
			남동구 인주대로610번길 7			남동구 인주대로610번길 7
			남동구 인주대로610번길 9			남동구 인주대로610번길 9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9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9
			남동구 남동대로747번길 56			남동구 남동대로747번길 56
			남동구 예술로172번길 9			남동구 예술로172번길 9
			남동구 예술로174번길 12			남동구 예술로174번길 12
			남동구 예술로174번길 22			남동구 예술로174번길 22
			남동구 성말로13번길 85			남동구 성말로13번길 85
			남동구 예술로172번길 27			남동구 예술로172번길 27
			남동구 예술로172번길 33			남동구 예술로172번길 33
			남동구 예술로174번길 34			남동구 예술로174번길 34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10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10
			남동구 예술로172번길 39			남동구 예술로172번길 39
			남동구 예술로172번길 41			남동구 예술로172번길 41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12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12
			남동구 예술로174번길 40			남동구 예술로174번길 40
			남동구 예술로174번길 30			남동구 예술로174번길 30
			남동구 인주대로 582			남동구 인주대로 582
			남동구 인주대로 586			남동구 인주대로 586
			남동구 인주대로 588			남동구 인주대로 588
			남동구 인주대로 594			남동구 인주대로 594
			남동구 인주대로 596			남동구 인주대로 596
			남동구 인주대로 600			남동구 인주대로 600
			남동구 인주대로 600-1			남동구 인주대로 600-1
			남동구 인주대로 602			남동구 인주대로 602

만수2동

현행				조정후				비고 (조정 사유)
통	반	관할구역	세대수	통	반	관할구역	세대수	
1	1	102, 102-3~5, 7~8, 12~26, 32~33, 36~37, 40~45	35	1	1	만수로 9-12, 만수로 13 (동화연립 가동 101~307) (동화연립 나동 101~306)	30	
	2	102-41~45, 48~50, 52~62, 68~69, 71, 73, 75, 77~79	29		2	만수로19번길 3, 9, 11, 13, 15 만수로15번길 6, 6-1, 10, 10-2, 4, 6, 8, 11~14	48	
	3	102-27, 28, 31, 39 101-6~18, 20~29	59		3	백범로180번길 4, 8, 12, 만수로5번길 1, 5, 7, 11, 13, 15(신세대원룸빌라), 17, 만수로 3번길 4, 6, 7~11, 14~15, 17, 만수로 1, 백범로164-1, 166, 172, 176, 178, 180, 182, 19 0	93	
	4	873, 873-1~31, 874-1~2 873-2(신세대원룸빌라),	93		4	만수로 7, 9, 9-5, 9-9(남경빌라), 9-13, 만수로5번길 10, 12, 14, 16-1, 백범로 190	66	
	5	871-20, 872, 872-3~4, 5, 7~12, 872-2(남경빌라), 874-1	66					
2	1	871-16 (동화연립 가동 101~307) (동화연립나동 101~306), 871-18	30	2	1	만수로5번길 6-7, 16-1(만수북빌라 나동 B01~302, 다동 B01~302), 16-3(만수북빌라 가동B01~302), 16-10, 16-13, 16-14, 16-15, (수 천원룸피아 B01~204), 만수로 9-12(동화연립 가동108~308)	59	
	2	871-5(만수북빌라가동B01~302), 871-9~11, 13, 14, 871-15(수천원룸피아B01~204) 871-16(동화연립 가동 108~308) 871-20, 871-2 (만수북빌라 나동 B01~302, 다동 B01~302)	59		2	만수로 15번길 23(삼성빌라 3동B01~402), 만수로5번길 16-7, 백범로180번길 16, 24(삼성빌라 1동B01~402), 26(삼성빌라 2동B01~402)	98	
	3	871(삼성빌라3동 B01~402), 871-1~4, 871-23(삼성빌라2동B01~402) 871-24(삼성빌라1동B01~402) 871-24(삼성빌라1동B01, 201호, 2동 301, 401)	98		3	만수서로20(신진연립), 22-4, 6, 8, 10, 12, 16, 1 8, 백범로180번길 37-2, 7, 11, 13, 18	100	
	4	870-5~7, 9, 12, 15~17, 19, 24, 25, 104-14, 870-1~5, 18, 20	48					
	5	870-21, 23~27, 29~31	33					
	6	867(신진연립) 867-1, 3, 4, 6, 7, 8, 867-10~17, 21, 202 104-7, 867, 867-82	100		4	만수로 15번길 10-9~11, 10-13, 10-15, 10-16, 20, 22, 24	33	

현행				조정후				비고 (조정사유)
통	반	관할구역	세대수	통	반	관할구역	세대수	
18	1	68-1,5 ~ 11 822-26,27,31,36,37	30	18	1	만수로105번길 18-18,아주아파트 가동 101 ~ 510	51	
	2	5-95,100,105,107,109, 5-187 ~ 189,191 ~ 201, 5-203 ~ 204, 384,410,440 822-17,18,28 ~ 30,33 ~ 35 824-7	39		2	만수로111번길 23,19(만수그린빌라) 만수로111번길 17(한일빌라)	55	
	3	5-96 ~ 98,167 ~ 172, 5-176 ~ 184, 311	30		3	만수로75번길 76-2,강남맨션110-1,-2동 만수로75번길 74,강남맨션104동 만수로75번길 76,강남맨션105동 만수로75번길 74-1,강남맨션106동 만수로75번길 76-1,강남맨션107동 만수로75번길 84,강남맨션108동	82	
	4	5-494 강남맨션101동 5-493 강남맨션102동 5-491 강남맨션103동 5-492 강남맨션109동 5-495 강남맨션111동 5-496 강남맨션112동	77		4	만수로75번길 70-3,강남맨션101동 만수로75번길 70-2,강남맨션102동 만수로75번길 70,강남맨션103동 만수로75번길 70-1,강남맨션109동 만수로75번길 70-5,강남맨션111동 만수로75번길 70-4,강남맨션112동	77	
	5	5-30아주아파트바동101 ~ 608	49					
	6	5-30아주아파트바동109 ~ 616	54					
	7	5-322아주아파트사동101 ~ 609	60					
	8	5-488강남맨션110-1,-2동 5-476강남맨션104동 5-474강남맨션105동 5-487강남맨션106동 5-475강남맨션107동 5-471강남맨션108동	82					
19	1	5-320아주아파트 가동 101 ~ 510	51	19	1	만수로105번길 18-18,아주아파트 나동 101 ~ 510	52	
	2	5-320아주아파트 나동 101 ~ 510	52		2	만수로105번길 18-18,아주아파트 다동 101 ~ 513	69	
	3	5-320아주아파트 다동 101 ~ 513	69		3	만수로 97,아주아파트 라동 101 ~ 607	50	
	4	5-318아주아파트 라동 101 ~ 607	50		4	만수로 97,아주아파트 라동 108 ~ 614	36	
	5	5-318아주아파트 라동 108 ~ 614	36		5	만수로 97,아주아파트 마동 101 ~ 610	62	
	6	5-318아주아파트 마동 101 ~ 610	62		6	만수로 97,아주아파트 마동 111 ~ 621	64	
	7	5-318아주아파트 마동 111 ~ 621	64					
	8	5-442,443만수그린빌라 5-444한일빌라	55					
30	1	1113번지(유신주공아파트 1101동 101 ~ 1506)	96		1	폐지(만수4동 편입)		
	2	1113번지(유신주공아파트 1102동 101 ~ 2004)	85		2			
	3	1113번지(유신주공아파트 1103동 101 ~ 1506)	95		3			
	4	1113번지(유신주공아파트 1104동 101 ~ 2004)	85		4			
	5	1113번지(유신주공아파트 1105동 101 ~ 1504)	59		5			
	6	1113번지(유신주공아파트 1106동 101 ~ 1504)	64		6			

현행				조정후				비고 (조정사유)
통	반	관할구역	세대수	통	반	관할구역	세대수	
31	1	1113번지유신주공아파트 1107동 101 ~ 2004	83		1	폐지(만수4동 편입)		
	2	1113번지유신주공아파트 1108동 101 ~ 1106	69		2			
	3	1113번지유신주공아파트 1108동 101 ~ 2006	40		3			
	4	1113번지유신주공아파트 1109동 101 ~ 1208	96		4			
	5	1113번지유신주공아파트 1110동 101 ~ 1504	58		5			
	6	1113번지유신주공아파트 1111동 101 ~ 1506	94		6			
32	1	3-9 정광아파트 가동 101 ~ 611	61		1	폐지(만수4동 편입)		
	2	3-9 정광아파트 나동 101 ~ 609	57		2			
	3	3-73공작아파트가동101 ~ 610	44		3			
	4	3-73 (공작아파트가동 611 ~ 616) (공작아파트나동 101 ~ 605)	72		4			
	5	3-81 청실상가 2층동 3-84,85,86,87,88 (청실빌라 1,2,3,4,5동)	38		5			
	6	3, 3-7,39,85,86,76,77, 78,83,3-88(청실빌라6,7,8, 9,10,11동)	64		6			
33	1	향촌휴먼시아단지@134동	76	30	1	만수서로 55, 향촌휴먼시아단지@134동	76	통명칭변경
	2	향촌휴먼시아단지@135동	79		2	만수서로 55, 향촌휴먼시아단지@135동	79	
	3	향촌휴먼시아단지@136동	107		3	만수서로 55, 향촌휴먼시아단지@136동	107	
	4	향촌휴먼시아단지@137동	40		4	만수서로 55, 향촌휴먼시아단지@137동	40	
	5	향촌휴먼시아단지@138동	72		5	만수서로 55, 향촌휴먼시아단지@138동	72	
				31	1	만수로 76,78,80 만수서로87,89,93-7	30	통분할신설 (과밀지역 18통,19통분할)
					2	만수로75번길 8,16,18,18-1,20,20-1,24,26, 만수로 79,81,85,85-1,87,91,91-1,만수로9 3번길 11,13	39	
					3	만수로75번길 30,32,34,36,40,42,44,46,48,52,54, 56,58,30,60,62,66	30	
					4	만수로105번길 23(아주아파트바동101 ~ 608)	49	
					5	만수로105번길 23(아주아파트바동109 ~ 616)	54	
					6	만수로105번길 23(아주아파트사동101 ~ 609)	60	

만수4동

현 행				조 정 후				비 고 (조정사유)
통	반	관 할 구 역	세대수	통	반	관 할 구 역	세대수	
1	1	29(주공아파트 101~102동),32	24	1	1	만수로 12-5, 12-6, 10-3 백범로164번길 17,22-2,18-1, 18-3,22-1,22-2,22-5,22-6, 22-7,22-8,18-5,18-6,18-7, 18-8,18-9,18-10,18-12 백범로164번길18-2(대승아트빌) 백범로164번길22-10(늘푸른홈타운)	35	편입
	2	29(주공아파트 103~104동)	28					
	3	29(주공아파트 105~106동)	33					
	4	29(주공아파트 107~108동)	26		2	만수로 2,4,4-1,4-3,4-4,4-5, 4-6,6,6-3,6-4,6-5,6-6,8,8-1,10-2,10-4,10-6 백범로164번길 5,7,11,13 백범로164,166	29	
	5	29(주공아파트 109동,111동)	47		3	백범로164번길 8-1,8-3,8-4, 8-5,8-6,8-7,8-8,8-9,8-10, 12-1,12-2,12-3,12-4,12-5, 12-6,12-7,12-9,12-11,12-13 백범로164번길 12-10(세움파크빌비동),12-8(세움파크빌에이동) 백범로 158,160,160-1,162, 164-1,166	59	
	6	29(주공아파트 110동)	38		4	만수로14-26 (주공아파트 101~104동)	52	
	7	29(주공아파트 112동)	35		5	만수로14-26 (주공아파트 105~108)	59	
2	1	29(주공아파트 113동)	30		1	만수로14-26(주공아파트 109) 만수로14-25(주공아파트110~111동)	84	
	2	29(주공아파트 114동)	32		2	만수로14-25(주공아파트 112~113동)	65	
	3	29(주공아파트 115동)	30		3	만수로14-25(주공아파트 114~115동)	63	
	4	29(주공아파트 116동)	36		4	만수로14-25(주공아파트 116~118동)	93	
	5	29(주공아파트 117동)	28		5	만수로14-25(주공아파트 119~120동)	88	
	6	29(주공아파트 118동)	29		6	폐지		
	7	29(주공아파트 119동)	52		7	폐지		
	8	29(주공아파트 120동)	38		8	폐지		

현행				조정 후				비 고 (조정사유)
통	반	관 할 구 역	세대수	통	반	관 할 구 역	세대수	
		만수2동 편입지역 신설	33	1		만수서로105번길 40-18(유신주공아파트 1101동 101 ~ 1506)	96	
				2		만수서로105번길 40-18(유신주공아파트 1102동 101 ~ 2004)	85	
				3		만수서로105번길 40-18(유신주공아파트 1103동 101 ~ 1506)	95	
				4		만수서로105번길 40-18(유신주공아파트 1104동 101 ~ 2004)	85	
				5		만수서로105번길 40-18(유신주공아파트 1105동 101 ~ 1504)	59	
				6		만수서로105번길 40-18(유신주공아파트 1106동 101 ~ 1504)	64	
			34	1		만수서로105번길 40-18(유신주공아파트 1107동 101 ~ 2004)	83	
				2		만수서로105번길 40-18유신주공아파트 1108동 101 ~ 1106)	69	
				3		만수서로105번길 40-18(유신주공아파트 1108동 101 ~ 2006)	40	
				4		만수서로105번길 40-18(유신주공아파트 1109동 101 ~ 1208)	96	
				5		만수서로105번길 40-18(유신주공아파트 1110동 101 ~ 1504)	58	
				6		만수서로105번길 40-18(유신주공아파트 1111동 101 ~ 1506)	94	
			35	1		만수서로105번길 48 (정광아파트 가동 101 ~ 611)	61	
				2		만수서로105번길 48 (정광아파트 나동 101 ~ 609)	57	
				3		만수서로105번길 40-23 (공작아파트 가동 101~610호) 만수서로105번길 40-19 (공작아파트 상가)	44	
				4		만수서로105번길 40-23 (공작아파트 가동 611~616호) 만수서로105번길 40-21 (공작아파트 나동 101~605호)	72	
				5		수현로97번길20-2(청실상가), 수현로97번길20-1,20-5,20-7, 20-9,8-4(청실빌라1~5동)	38	
				6		수현로97번길 8-6,8-2,6,12, 10,20-6(청실빌라 6~11동) 수현로 99(거성하이츠), 101(명지타운), 103	64	

통 · 반 구역 조정 현황

▷ 승인 일자 : 2015.7.31

구분 동명	현행		증감		조정후		비고
	통	반	통	반	통	반	
계	656	3,692	1	-9	657	3,683	
구월1동	47	254	-12	-66	35	188	
구월2동	41	222	0	0	41	222	
구월3동	25	137	12	65	37	202	
구월4동	31	171	0	0	31	171	
간석1동	38	214	0	0	38	214	
간석2동	20	139	0	0	20	139	
간석3동	47	241	0	0	47	241	
간석4동	39	213	0	0	39	213	
만수1동	35	171	0	0	35	171	
만수2동	33	177	-2	-21	31	156	
만수3동	23	132	0	0	23	132	
만수4동	32	198	3	13	35	211	
만수5동	28	184	0	0	28	184	
만수6동	33	185	0	0	33	185	
장수서창동	47	234	0	0	47	234	
남촌도림동	34	193	0	0	34	193	
논현1동	39	241	0	0	39	241	
논현2동	33	210	0	0	33	210	
논현고잔동	31	176	0	0	31	176	